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1-28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편성규제 전면 개편안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broadcast  
programming regulation in a changing  
media landscape

2021.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1-28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편성규제 전면 개편안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broadcast programming  
regulation in a changing media landscape)

심홍진/주성희/노은정

2021.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편성규제 전면  
개편안 연구』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 심홍진 연구위원

주성희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노은정 전문연구원



# 목 차

요약문 .....	ix
<b>제1장 서론 .....</b>	<b>1</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3
1. 연구의 주요 내용 .....	3
2. 연구방법 .....	3
제3절 국내 편성규제 정비와 국제통상규범 .....	5
1. 국제통상협정의 의무규범과 국내 규제의 관계 .....	5
2. 한미 FTA의 방송시장 개방과 편성규제 관련 유보 .....	6
3. 편성규제 정비에 대한 합의 .....	10
<b>제2장 국내의 주요 편성규제 현황 .....</b>	<b>12</b>
제1절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	12
1. 법령 및 고시 현황 .....	12
2. 규제 연혁 .....	13
3. 선행연구 .....	14
4. 해외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	15
제2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	16
1. 법령 및 고시 현황 .....	16
2. 규제 연혁 .....	17
3. 선행연구 .....	18
4.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	19

제3절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수중계 편성규제)	20
1. 법령 및 고시 현황	20
2. 규제 연혁	21
3. 선행연구	22
제4절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23
1. 법령 및 고시 현황	23
2. 규제 연혁	23
3. 선행연구	24
4. 해외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규제	25
제5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26
1. 법령 및 고시 현황	26
2. 규제 연혁	27
3. 선행연구	28
제6절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30
1. 법령 및 고시 현황	30
2. 규제 연혁	32
3. 선행연구	34
4. 해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35
<b>제3장 현행 편성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b>	<b>37</b>
제1절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37
1.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관련 문제점	37
2. 규제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	38
제2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42
1.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관련 문제점	42
2. 규제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	43
제3절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수중계 편성규제)	45
1. 수중계 편성규제 관련 문제점	45

2. 규제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 .....	46
제4절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	48
1.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규제 관련 문제점 .....	48
2. 규제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 .....	49
제5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	50
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관련 문제점 .....	50
2. 규제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 .....	52
제6절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	61
1.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관련 문제점 .....	61
2. 규제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 .....	63
<b>제4장 결 론 .....</b>	<b>71</b>
제1절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개선 방안 .....	71
1. 개선 방안 .....	71
2. 기대효과 .....	75
제2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개선 방안 .....	76
1. 개선 방안 .....	76
2. 기대효과 .....	77
제3절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 개선 방안 .....	78
1. 개선 방안 .....	78
2. 기대효과 .....	79
제4절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개선 방안 .....	80
1. 개선 방안 .....	80
2. 기대효과 .....	80
제5절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개선 방안 .....	82
1. 개선 방안 .....	82
2. 기대효과 .....	85
제6절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개선 방안 .....	86

1. 개선 방안 .....	86
2. 기대효과 .....	88
제7절 기타 편성규제에 관한 개선 방안 .....	89
1.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 .....	89
2. 지상파DMB 의무편성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 .....	92
<b>참고문헌 .....</b>	<b>94</b>
<b>[부록 1] 방송법 .....</b>	<b>97</b>
<b>[부록 2] 방송법 시행령 .....</b>	<b>100</b>
<b>[부록 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b>	<b>105</b>
<b>[부록 4]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구별 기준(제5조 관련) .....</b>	<b>118</b>
<b>[부록 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구별 기준(제7조 관련) .....</b>	<b>119</b>
<b>[부록 6] 해외 주요국의 국내제작물 편성규제 사례 .....</b>	<b>120</b>
<b>[부록 7] 특수관계자 관련 법령 .....</b>	<b>123</b>

# 표 목 차

<표 1-1> 한미 FTA 전후 방송 관련 규제 변화 .....	6
<표 1-2> 한미 FTA의 편성규제 관련 현재유보 .....	8
<표 1-3> 한미 FTA의 편성규제 관련 미래유보 .....	9
<표 2-1> 방송프로그램의 분야별 의무편성 규제 관련 법규 .....	12
<표 2-2> 보도·교양·오락 의무편성비율 변경 내역 .....	13
<표 2-3>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의무편성 관련 법규 .....	16
<표 2-4>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 .....	17
<표 2-5> 수중계 편성규제 관련 법규 .....	20
<표 2-6> 다른 한 방송사업자 편성규제 현황 .....	21
<표 2-7>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관련 법규 .....	23
<표 2-8>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변동 추이 .....	24
<표 2-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관련 법규 .....	26
<표 2-1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비율 .....	27
<표 2-1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추이 .....	28
<표 2-12>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규제 관련 법규 .....	30
<표 2-13>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현황 .....	31
<표 2-14>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산정시 가중치 규정 .....	31
<표 2-15>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추이 .....	33
<표 2-16> EU 회원국별 EU 외주제작물 편성 비율 .....	35
<표 3-1> 재허가·재승인 통한 조화로운 편성 유인 예시 .....	39
<표 3-2>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방송평가) .....	39
<표 3-3> 지역민방 편성비율 현황(2019년) .....	45
<표 3-4>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평가 항목 및 배점방식 .....	54
<표 3-5>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총괄 현황 .....	61
<표 3-6>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 편성비율 현황 .....	62

<표 4-1>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의 배점방식 및 평가대상 .....	72
<표 4-2>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정성 배점 및 평가방법(지상파) .....	73
<표 4-3>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정성 배점 및 평가방법(중편PP) .....	74
<표 4-4> 주된 방송 분야 편성규제 개선 방안 .....	76
<표 4-5>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	83
<표 4-6> 방송시별 방송사업매출액 현황 .....	84
<표 4-7>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개선 방안 .....	85
<표 4-8>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 편성비율 현황 .....	87
<표 4-9>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관련 법규 .....	89
<표 4-10> 한미 FTA의 편성규제 관련 현재 유보 .....	91
<표 4-11> 지상파DMB에 대한 편성규제 현황 .....	92

# 요 약 문

## 1. 제 목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편성규제 전면 개편안 연구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의 방송시장은 미디어 환경변화와 매체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지상파로 대변되는 레거시 미디어의 입지와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고 유료방송과 인터넷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은 수동적·실시간 형태의 시청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OTT·VOD 등의 전통적 방송매체의 대체제가 보편화되면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필요에 따라 영상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능동적·비실시간 시청행태로 변화하면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방송채널과 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의 다원성 역시 확대되었다. 문제는 현행 규제, 특히 방송 편성규제가 이러한 방송 콘텐츠 공급자, 이용자 및 생태계의 변화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반영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 방송 편성규제가 이용자의 유일한 영상 콘텐츠 이용 경로가 지상파이던 시기의 실시간 시청행태를 기반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행 방송 편성규제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방송 편성규제는 지상파 등 전통적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처럼 비대칭적으로 작동하는 편성규제는 상대적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방송시장에서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경직되어 있는 편성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밖에도 방송시장의 자율과 경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성규제를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확

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방송 편성규제 도입의 전제조건, 규제목적의 달성 여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실효성, 정책환경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을 마련한다. 둘째, 경직된 규제를 적용하여 방송시장의 창의성과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는 것보다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규제개선을 통해 방송시장 내 자율적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방송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증가 등 시장 확대를 이끌어 내고 질 좋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경쟁을 유인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도모한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국제통상규범(한미 FTA)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국내외 주요 편성규제 현황)에서는 편성규제 항목별 법령 및 고시 현황, 규제 연혁,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항목별 국외 편성규제를 조사하였다. 세부적으로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수중계 편성규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가 포함된다.

제3장(현행 편성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서는 상기한 편성규제 항목별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반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제시한다.

제4장(결론: 편성규제 항목별 개선방향 제안)에서는 제3장에서 소개한 편성규제 항목별 규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규제 개선 시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편성규제 항목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수중계 편성규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1개국 수입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등이 포함된다.

첫째,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는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편성을 통해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OTT 서비스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동 규제의 폐지를 제안하였다. 다만, 공적 재원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조화롭고 균형된 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동 규제의 폐지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의 과도한 편성에 대한 우려는 현행 방송평가 및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활용하는 보완책을 제안하였다.

둘째,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는 매체 간 규제 형평성과 최소 규제원칙을 적용하여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매체 구분 없이 ‘60% 이상’으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수중계 편성규제) 규제에 대해서는 단기 개선 방안과 중장기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단기 개선 방안으로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는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규제를 자체제작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는 애니메이션 업계와의 상생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의무 편성비율 변화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편성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상파도 종편·애니PP와 같이 편성고시를 통해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으로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비율을 차등화하고, 종편PP에 적용되는 방송사업매출액 구간의 현행화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는 해외 콘텐츠 유통경로

다원화 등으로 인해 규제 존속 필요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의 폐지를 제안하였다.

여섯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는 외주제작 업계와의 상생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의무 편성비율 변화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편성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시간대 순수외주 편성규제와 중복되어 이중규제로 작용하는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 편성규제의 폐지,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성 구현 등을 위해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의 폐지, 규제 간소화를 위해 법령상으로만 존재하는 지상파PP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폐지를 제안하였다.

그 밖에 국내제작물 의무편성규제와 지상파DMB에 관한 편성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가 제시하는 편성규제 개선안은 편성규제의 현행화 및 규제 형평성을 달성함으로써 과거 규제 프레임에 의존하는 현행 편성규제의 경로의존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편성규제의 정책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규제 합리화를 추진함으로써 방송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확대하여 방송산업의 활성화의 정책적 토대가 될 수 있다.

## 6. 기대효과

편성규제 개선을 통해 방송사업자들이 빠른 시장변화를 민첩하게 따라잡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고품질 콘텐츠 성장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방송사업자가 우수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편성규제 개선 및 유관 법령 개선이라는 정책적 인프라를 토대로 방송사업자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동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글로벌 OTT(Over The Top) 서비스는 막대한 자본력과 콘텐츠 경쟁력, 글로벌 유통망을 갖추고 방송 미디어 생태계의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비선형적(nonlinear) 미디어 이용이 일반화되는 등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방송 미디어 생태계의 지형 변화와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는 방송사업자 사이에 존재하던 경쟁 관계는 물론, 더 나아가 미디어 시장 전반에도 지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여파는 방송시장을 OTT 서비스,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과거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던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전통적 방송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가속화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방송시장은 미디어 환경변화와 매체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지상파로 대변되는 레거시 미디어의 입지와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고 유료방송과 인터넷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어떤 매체의 경쟁력과 매체 생태계 내에서 생존 기반은 해당 매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규모와 이용행태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시 규제체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은 수동적·실시간 형태의 시청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OTT·VOD 등의 전통적 방송매체의 대체제가 보편화되면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필요에 따라 영상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능동적·비실시간 시청행태로 변화하면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방송채널과 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의 다원성 역시 확대되었다. 문제는 현행 규제, 특히 편성규제가 이러한 방송 콘텐츠 공급자, 이용자 및 생태계의 변화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반영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현행 편성규제가 이용자의 유일한 영상 콘텐츠 이용 경로가 지상파이던 시기의 실시간 시청행태를 기반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인 문제점은 현행 방송 편성규제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진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OTT 서비스는 방송법상 편성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청자는 OTT 서비스의 콘텐츠와 레거시 미디어의 콘텐츠간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시청자의 필요에 따라 소비되는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콘텐츠의 속성과 본질은 생산 주체와 무관하게 유사하다. 그럼에도 현행 방송 편성규제는 지상파 등 전통적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비대칭적으로 작동하는 편성규제는 상대적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방송시장에서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와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우선 한쪽으로만 경직된 편성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시장의 자율과 경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성규제를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방송 편성규제 도입의 전제조건, 규제목적의 달성 여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실효성, 정책환경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을 마련한다. 둘째, 경직된 규제를 적용하여 방송시장의 창의성과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규제개선을 통해 방송시장 내 자율적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방송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증가 등 시장 확대를 이끌어내고 질 좋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경쟁을 유인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도모한다.

이러한 목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네 가지의 규제개선 원칙을 세운다. 첫째, 규제의 목적은 정당해야 할 뿐 아니라, 뚜렷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해야 한다. 둘째, 규제의 범위와 내용은 방송편성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매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넷째, 규제의 방법과 수단은 실질적이어야 하며 실효성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주요 내용

전술한 연구 목적에 따라 ① 현행 편성규제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② 각 규제별로 파악한 문제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한다. ③ 도출된 규제별 개선안에 대해 학계의 논의를 거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안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2. 연구방법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진(이하 연구진)을 중심으로 외부 학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들(이하 위원)이 참여하는 편성규제개선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 및 운영한다. 연구진은 기존의 정책 보고서 및 관련 연구문헌을 조사하여 현행 편성규제의 규제별 문제점과 쟁점을 작성하여 연구반과 공유하고 분석한다. 더 나아가 연구진이 제시하는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위원들과 심층적 논의를 거쳐 진일보한 개선안과 중장기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행 편성규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연구반<sup>1)</sup> 논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 합리적 논의 절차를 거쳐 항목별로 편성규제 개선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① 연구진은 현행 편성규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파악한다. ② 연구진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한 규제 현행화 등의 보완 과정을 거친 후, 개선안 초안을 마련한다. ③ 연구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한 문제점과 개선안 초안에 대해 연구반 위원들과 심층적인 논의 후 개선안 초안을 보완한다. ④ 보완 과정 후 작성된 초안을 이해관계자 자문<sup>2)</sup>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 개선안

---

1) 연구반은 학계(방송/법률 분야)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2) 연구진은 연구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마련한 편성규제 개선안(또는 개선방향)에 대해 방송협회, 독립제작사협회, 애니메이션제작협회 등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보완한다. 아울러 연구반 운영 과정에서 규제의 성격과 특

의 실효성을 진단한다. 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학계 및 법률 전문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실무자가 참석하는 연구반에서 해당 규제 개선안을 최종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별 편성규제 개선안 또는 개선방향을 작성한다. 연구진이 제안한 규제 항목별 최종 개선안은 본 보고서의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일반PP), 독립제작사, 애니메이션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유관 학계 전문가(예: 애니메이션 분야)의 의견도 청취하여 해당 개선안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 제 3 절 국내 편성규제 정비와 국제통상규범

### 1. 국제통상협정의 의무규범과 국내 규제의 관계

한국은 1967년에 이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5년 1월 출범한 WTO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1년 3월 현재 57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해왔다. 국제협정은 국가 간의 약속이므로 한국은 WTO 뿐만 아니라 이후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통상협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정의 규범과 내용들은 국내 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한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WTO에서 서비스 분야의 일반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은 점진적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차별 대우'가 핵심 원칙이다. 비차별 대우는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NT, National Treatment), 그리고 특정 국가와 다른 국가 사업자 간에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내 조치에서 국내 사업자 대비 외국 사업자 또는 특정 국가 대비 나머지 국가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대우 즉,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원칙에 더하여 한국이 체결한 여러 국제통상협정은 외국 사업자의 시장접근 제한 금지(MA: Market Access), 현지주재 요구금지(LP: Local Presence)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내 법규 및 정책의 명료성, 공개성(TP: Transparency)등을 요구한다.

국제통상협정은 국가 간에 체결한 일종의 약속이며 특히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거쳐서 체결된 조약들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국제통상협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국내 법규정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2007년 한미 FTA 체결 이후 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방송 관련 규제가 <표 1-1>에 제시된 같이 정비된 바 있다.

〈표 1-1〉 한미 FTA 전후 방송 관련 규제 변화

구분		한-미 FTA 이전	한-미 FTA 이후
채널사용사업(PP)에 외국인 투자 허용 한도	직접투자	49%까지 가능	좌동
	간접투자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거나 50% 이상 지분 소유 금지	외국인(미국) 간접투자 제한 폐지(100% 허용) ※ 보도, 종편, 흡쇼핑 제외
국내제작물 편성쿼터	비정상파(SO, PP, 위성방송 등)의 장르별 국내제작물 편성쿼터	애니메이션 35% 영화 25%	애니메이션 30% 영화 20%
	각 장르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쿼터	각 장르별 전체 수입물 편성 시간의 60% 이하	80% 이하

같은 맥락에서 국제통상협정의 의무규범은 향후 국내 규제의 제정 및 정비와 관련된 미래의 규제재량권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 가령,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 대해 국내 방송 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에는 협정문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는 일부 규제를 제외하고 외국 사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의 신설 또는 기존 규제의 강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 2. 한미 FTA의 방송시장 개방과 편성규제 관련 유보

한국은 WTO 가입 시에는 시청각서비스 분야 중 방송 분야를 개방하지 않았지만, 2007년 타결된 한미 FTA에서는 방송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 한미 FTA는 특히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한 분야를 협정문에 적시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ing)을 채택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의 특징은 협정문의 본문 또는 부속서에서 그 예외를 인정받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모두 개방한 것으로 간주하여<sup>3)</sup>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높다는 점이다.

한미 FTA 협정문의 부속서 I에서는 협정 체결 당시의 국내 조치 즉, 국내 법령 가운데 통상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일명, 비합치조치)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해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정한 조치들을 적고 있다[현재유보]. 이와 달리 부속서 II에서는 미래에 정당한 공

3) 반면, GATS의 경우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ing)을 채택하였고,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이라는 명칭하에 개방된 분야 내에서 해당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명시하였다.

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당사국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는 국내 규제 또는 서비스 분야들을 열거하고 있다[미래유보].

한편, 한미 FTA는 다른 협정과 달리 역진방지(Ratchet)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특징도 있다.<sup>4)</sup> 이는 협정 체결 당시 현재유보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허용하기로 약속한 국내 규제의 내용을 협정 체결 이후에 더 강화하거나, 또는 협정 당사국인 미국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을 한미 FTA를 통해 추구하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역행으로 간주하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으로,<sup>5)</sup> 국내 규제재량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가령, 역진방지 조항을 방송 분야에 적용한다면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방송법에서 그 예외를 인정받은 규제 외에 외국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관련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되며 당시 예외를 인정받은 규제들 역시 그 규제 수준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한미 FTA에서 방송 분야의 미래유보 조항을 살펴보면 ‘포괄적’ 미래유보가 아니라 어떤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이를 만족시키는 경우 그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미래유보 형태를 취한 경우가 있어서 미래유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와 향후 국내 규제재량권 행사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속서 II에 포함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미래유보 조항을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 접근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에 기초해야함은 물론, 콘텐츠 접근의 어려움을 증명한 후에도 국내에서 취하는 법적 조치들이 교역을 제한하거나 외국 사업자에게 부담스러워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방송과 유사한 어떤 디지털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제

---

4) 해당 조항은 한미 FTA 협정문 투자챕터의 제11.12조(비합치조치), 서비스챕터의 제12.6조(비합치조치)에 명시되어 있다.

5) 구체적으로 현재유보에 포함된 비합치조치들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만 허용한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유보를 통해 그 예외가 인정된 규제들도 일단 규제가 완화된다면 완화된 그 수준보다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공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국산 콘텐츠가 제공되더라도 한국 시청자들이 어떤 이유로 이러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어렵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러한 문제점을 증명하고 해당 서비스에서 한국 콘텐츠의 시청이 원활해질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한다 해도 이러한 규제가 외국 특히 미국 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면서 특히 편성 규제와 관련된 한미 FTA의 현재유보와 미래유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sup>6)</sup>

〈표 1-2〉 한미 FTA의 편성규제 관련 현재유보

유보종류	예외가 인정된 편성규제
현재유보 (부속서 D)	<p>▶ 국내제작물 쿼터: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방송법상의 전체 방송 시간 및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규제</p> <p>&lt;대한민국 콘텐츠 편성비율&gt;</p> <p>가. 지상파·지상파PP-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80%</p> <p>나. SO·위성-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50%</p> <p>다. PP-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50%</p> <p>&lt;분야별 대한민국 콘텐츠 편성비율&gt;</p> <p>지상파:</p> <p>가. 애니메이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5%</p> <p>나. 영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5%</p> <p>다. 음악: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60%</p> <p>SO, 위성, 또는 PP:</p> <p>가, 음악: 채널별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60%</p> <p>나. 애니메이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0%</p> <p>나. 영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0%</p>

6) 이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에서 편성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재 유보와 미래유보만을 제시하였다.

유보종류	예외가 인정된 편성규제
	<p>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 DMB 에 대하여는 일정한 별도의 콘텐츠즈 쿼터 요건 적용</p> <p>위성DMB에 대하여는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콘텐츠즈 쿼터 요건 적용</p> <p>&lt;1개 국가 제작 콘텐츠즈 편성비율[한도]&gt;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SO,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PP의 분야별 외국 콘텐츠즈 분기별 전체 편성시간의 100분의 80 또는 그 이상이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외국 콘텐츠즈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1개국 콘텐츠즈 한도라 한다).</p>

<표 1-3> 한미 FTA의 편성규제 관련 미래유보

유보종류	분야	유보조건
<p>미래유보 (부속서 II)</p>	<p>▶ 방송서비스</p> <p>(1)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sup>7)</sup> 및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p> <p>(2) 애니메이션 주편성 또는 종합 편성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국내 신규제작 애니메이션 쿼터</p> <p>(3)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및 국내물 제작비 요건, 주시청시간대 쿼터 규제</p> <p>(4) VOD 서비스 제공 방송사업자<sup>8)</sup>의 국내콘텐츠 보유 의무</p> <p>(5) 특정분야 외국방송 재송신 서비스(외국 케이블 채널 포함)의 제한 또는 금지</p>	<p>(1) 그러한 조치는 2007년 4월 30일 현재 미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즈에 허용되고 있는 시장접근 수준을 중대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p> <p>(2)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적용할 경우 부속서I의 유보항목에서 규정된 수준보다 더 많은 외국 콘텐츠즈를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p> <p>(3)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적용할 경우 부속서I의 유보항목에서 규정된 수준보다 더 많은 외국 콘텐츠즈를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p> <p>(4) 다만 그러한 요건이 소비자의 수요가 미미한 비디오의 보유로 귀결되어서는 안됨</p> <p>(5) 해당 분야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조치를 철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되, 협정</p>

유보종류	분야	유보조건
		서명일 이전에 승인된 외국방송 재송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방송 및 통신서비스  (6) 가입자 기반 비디오 서비스 (subscription based video services) <sup>9)</sup> 에 대한 조치	(6) 규제 내용이 부속서 I에 기입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보다 불리하면 안됨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7) 방송프로그램의 국내제작물 인정기준	(7) 국내제작물 인정기준이 부속서 I, II의 유보내용과 합치해야함

### 3. 편성규제 정비에 대한 함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협정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후속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 법령이 통상협정의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협정의 내용에 따라 국내 규제의 제, 개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규제 정비 권한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먼저, WTO 가입 당시 개방하지 않았던 방송 서비스 분야가 한미 FTA를 통해 전면 개방되면서 협정문에서 현재유보(부속서 I)를 통해 그 예외를 인정받은 규제(비합치조치)들은 역진방지 조치에 따라 현재 적용되는 규제 수준보다 강화할 수 없다.

미래유보의 경우 당사국의 국내 규제 재량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한미 FTA 방송분야의 미래유보는 포괄적 미래유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

- 
- 7) 관련 주석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 연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 쿼터 지정을 인정, KBS, MBC, SBS는 1000분의 10, EBS는 1000분의 3을 허용
  - 8) 이때 VOD 서비스 제공 방송사업자는 2007년 당시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사업자 중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넷플릭스 같은 OTT 사업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9) 이때 가입자 기반 비디오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하는 전용전송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IPTV와 양방향 방송을 의미(한미 FTA 부속서 II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분야)

족시키지 않는 한 규제 재량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신규편성 총량제의 경우 2007년 당시 방송편성 규제를 통해 부과되는 미국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시장 접근 제한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sup>10)</sup> 이 규제를 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유보에서 정한 수준보다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국내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을 낮추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 후 국내제작물 규제 완화가 불가피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향후 특정 분야 외국방송 재송신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조치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sup>11)</sup>

다시 말하면, 한미 FTA 협정문의 관련 조항을 고려할 때 방송편성과 관련된 국내 규제를 현행 수준보다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네거티브 양허 방식의 특징 상 한미 FTA에서 현재/미래유보를 통해 그 예외가 명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규제의 신설도 어렵다. 예를 들어, OTT 서비스와 같은 신규 시청각서비스를 일종의 유사방송사업자로 분류하여 방송법에 편입시키고 이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해 새로운 사업자 분류를 만들고 방송법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사업자군에 특히 미국 사업자가 포함되고 이들에 대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도입으로 인해 사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통상분쟁의 소지가 있다.<sup>12)</sup>

따라서 향후 방송 관련 규제의 정비는 국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제통상협정의 규범 위반 여부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편성규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외국 사업자에게 좀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제작물 관련 의무편성 규제가 국제통상협정의 규범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제작물 관련 규제의 완화는 더욱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10) 한미 FTA 부속서 II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방송 서비스 분야

11) 한미 FTA 부속서 II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방송 서비스 분야

12) 주성희·정은진·유희진(2018).

## 제 2 장 국내외 주요 편성규제 현황

### 제 1 절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 1. 법령 및 고시 현황

방송법에 따르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69조 제3항).

방송령 시행령에서는 보도·교양·오락 분야별로 조화로운 편성을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채널에 대해서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편성비율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제50조 제1항)

〈표 2-1〉 방송프로그램의 분야별 의무편성 규제 관련 법규

<p><b>방송법 제69조제3항</b></p>	<p>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p>
<p><b>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1항</b></p>	<p>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li> <li>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li> </ol>

〈표 2-1〉의 관련 규제 법규에서 볼 수 있듯이,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구체적 규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라디오 프로그램은 오락 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하고, 데이터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60% 이하로 편성해야 한다.

한편, 방송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서는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민의 교양 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끝으로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민 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 2. 규제 연혁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의 분야별 편성규제는 1963년 방송법 제정과 함께 규정되었다. 동 방송법 제정으로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 교육·교양, 오락, 광고 및 기타 분야”를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았다. 이후, 1973년 개정된 방송법에서는 보도(10% 이상), 교양(30% 이상), 오락(20% 이상)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규정하였다. 2000년 통합방송법 시행령은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의무편성 비율(20% 이상)이 아닌 편성 최대 허용비율(50% 이하)로 전환하였다(주창윤·황성연·유승현, 2012).

〈표 2-2〉 보도·교양·오락 의무편성비율 변경 내역

구 분	1964년	1973년	1988년	2000년	2001년	2004년	2021년
보 도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	-	-
교 양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이상	-	-
오 락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60% 이하

2001년에는 보도 편성 비율규제를 폐지하고, 규제 분야를 교양·오락 부문으로 축소하였다. 이후 2004년에는 교양 분야 편성비율 규제마저 폐지되어 현행 법령에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만 남아있다.

### 3. 선행연구

김남두 외(2019) 보고서에서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오락 편성비율 제한 규제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해 보도·교양·드라마 등의 분야에 대해(또는 공익적·산업적 가치가 인정되는 프로그램 범주들에 대해) 연간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고(단, 중복산정 허용) 평가점수 총점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재하는 방식의 ‘방송평가 형식의 편성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둘째, 보도·교양·드라마 등의 분야에 대해(또는 공익적·산업적 가치가 인정되는 프로그램 범주들에 대해) 최소 의무편성 비율을 부과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편성규제를 도입하되, 장르혼합형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중복산정을 허용하는 방안이다.<sup>13)</sup>

심홍진 외(2020) 보고서에서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하여 당시 현행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은 드라마·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과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을 ‘매월 50%’에서 ‘매월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규제 대상자의 규제 준수비용을 낮추고 편성의 자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편성비율의 산정기간을 현행 ‘매월’에서 ‘매반기’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이를 수용하여 2021년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락 편성비율 상한을 ‘매월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완화하였다. 덧붙여 동 연구에서는 추후 장르 3분류에 대한 보다 정교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유형별 편성비율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up>14)</sup>

---

13) 김남두 외(2019), p.118.

14) 심홍진 외(2020), p.67.

#### 4. 해외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① 오락분야 편성비용 규제를 폐지하거나, ② 분야별 조화로운 편성을 권장하되 구체적인 편성비율은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중국의 경우 한국처럼 오락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편성제도가 존재하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는 「FCC 편성 가이드라인(FCC Programming Policy Statement)」에 따라 상업방송의 비오락 프로그램(뉴스시사 등) 10% 이상 최소편성 의무가 규율되었으나, 1980년에 전면 폐지되었으며 이후 어린이 프로그램 최소 편성규제만 존재한다.<sup>15)</sup>

독일의 경우 「독일 미디어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협약(MStV)」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방송(ARD·ZDF)은 ‘정보·교육·오락의 적절한 편성을 이루되 특히 문화적으로 기여한 프로그램을 편성’ 하도록 권장되며, 동법 제51조 제2항에 의해 전국상업방송에는 ‘정보·교양·교육 분야를 적절분량으로 편성’ 한다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원칙을 수립(단, 전문테마채널 제외)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3분류 편성규제 체계의 모델이지만 일본 「방송법」 제3조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 제106조 ‘국내기간 방송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에 의해 ‘교양·교육, 보도, 오락 프로그램의 상호간의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음 뿐, 방송사의 자율 편성을 인정하고 있다<sup>16)</sup>. 2020년 NHK 경영위원회는 종합방송채널에 대해 보도 35%·교육 10%·교양 20%·오락 20%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편성비율을 발표하는 등 방송법에 근거하여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독자적으로 채널별 방송 편성기준을 수립하고 있다<sup>17)</sup>.

중국의 경우 2012년 「중국 TV위성 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매일 저녁 7시 30분~저녁 10시 사이에 방영되는 오락 프로그램이 총 9개를 넘지 말아야 하고, 종합채널 별로 1주일 동안 최대 2개까지 송출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2013년

---

15) Steve Waldman and the Working Group on Information Needs of Communities (2011), p.281.

16) 주창윤 외 (2012), p.24.

17) NHK 경영위원회(2020).

「위성 종합 채널 조정 정책」에 의하면 위성 종합채널의 경우 분기별 평가회의를 통해 우수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1개 선별하여 황금시간대에 편성하여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2016년 「방송TV프로그램 자주창작 업무추진에 관한 통지」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경우 1년에 한 시즌만 방영할 수 있으며 과도한 재방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 2 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 1. 법령 및 고시 현황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는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전문분야 외의 다른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을 방지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법에서는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한 전문편성 방송분야(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69조 제4항,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표 2-3〉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의무편성 관련 법규

<b>방송법 제69조 제4항</b>	④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b>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b>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b>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b>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④법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2. 데이터방송 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표 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허가·승인·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표 2-4〉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범주는 지상파, SO·위성, 일반PP 등 방송사업자 유형별로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다만, 공동체라디오의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표 2-4〉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

지상파	SO·위성	PP	데이터방송채널	공동체라디오
매반기 60% 이상	매반기 70% 이상	매반기 70% 이상	매반기 60% 이상	매월 60% 이상

## 2. 규제 연혁

주된방송 분야 편성규제는 구 방송법에서 1987년 지상파 ‘특수방송’ 개념을 신설하고 1990년 특수방송의 ‘주된 방송사항의 충분한 반영 의무’ 를 최초로 명시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공급분야를 등록하는 PP등록제가 시행되었고, 특수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문편성’ 개념으로 통합되어 방송법 시행령(2000.3.13 시행) 제50조 제4항에서 지상파 전문편성방송(구 특수방송)은 50% 이상·지상파 외 전문편성방송은 80% 이상 주된 방송분야를 편성하도록 규정하였다.

2004년 방송법 시행령(2004.9.17 시행)을 개정하여 규제 대상 사업자를 세분화하고 지상파 60%, SO·위성 70%, PP 80%, 데이터방송채널 60% 이상으로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였다.

하지만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 시 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질서를 해치는 문

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방송법(2006.10.27 시행) 개정을 통하여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등록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를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07년 방송법 시행령(2007.8.7 시행)에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기준을 신설하였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공공채널 등 일부채널을 제외하고는 교양과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는데,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채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였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이처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을 제한함으로써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신설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는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법 시행령을 한 번 더 개정하여(2013년 3월 23일 시행)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예외 기준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로 세분화하였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2021년에는 방송 편성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022.1.1. 시행)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하고 PP의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3. 선행연구

김남두 외(2019) 보고서에서는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규제와 관련하여 두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PP에 적용되는 매월 80%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의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중장기 과제로 ‘주된 방송분야의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sup>18)</sup>

심흥진 외(2020) 보고서에서 규제 형평성, 매체 경쟁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전문편성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산

---

18) 김남두 외(2019), p.119-120.

정기간 또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매월’ 산정에서 ‘매반기’ 산정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2021년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 에서 ‘매반기 70% 이상’ 으로 완화하여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sup>19)</sup>

#### 4. 해외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 규제를 폐지하였다.

중국의 경우 「라디오·TV유선데이터유료채널사업관리장정방법(2003)」에 의해 케이블 유료채널 프로그램은 전문성과 시청자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이고 시청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당일 전체 방송 분량의 9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0)</sup>

캐나다의 경우 80여개 유료전문채널의 면허조건으로서 ‘사전에 정한 전문장르에만 편성을 제한하던 제도(genre exclusivity policy)’ 를 2015년 이후 폐지하였다.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CRTC)는 해당 규제가 편성 다양성을 높이지 못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으며, 프로그램 혁신에 방해가 되고, 장르구분이 1984년에 도입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sup>21)</sup>

---

19) 심홍진 외(2020), p.69.

20) 김성웅(2011), p.19.

21)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2015-86” , CRTC, Mar 12, 2015, accessed Dec 20, 2021, <https://crtc.gc.ca/eng/archive/2015/2015-86.htm>.

### 제 3절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수증계 편성규제)

#### 1. 법령 및 고시 현황

수증계 편성규제는 지역민방 등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과도하게 수증계하는 것을 방지하여 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법규에서는 KBS, EBS, MBC, 지역MBC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69조 제6항, 제11항,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52조의2 제2항).

<표 2-5> 수증계 편성규제 관련 법규

<p><b>방송법 제69조 제6항, 제11항</b></p>	<p>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⑥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52조의2 제2항</b></p>	<p>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⑥ 법 제6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하</li> <li>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80 이하</li> <li>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li> <li>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li> </ol> <p>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p> <p>② 법 제6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p>

방송사업자의 유형별 편성규제 현황은 <표 2-6>과 같다. 구체적으로 지상파텔레비전과 지상파라디오는 방송사업매출액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반기 68~78% 이하로 편성하여야 하며, 지상파DMB는 매반기 80%이하로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다(편성고시 제2조 제1항~제4항). 한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30% 이상 편성할 수 없다(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표 2-6> 다른 한 방송사업자 편성규제 현황

구분	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지상파DMB
편성비율 상한	방송사업매출액에 따라 매반기 68~78% 이하		매반기 80% 이하

주: KBS, EBS, MBC, 지역MBC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됨

## 2. 규제 연혁

1991년 서울지역 민영방송 SBS의 개국 이후 1994년부터 2002년까지 3차에 걸쳐 KNN, TBC, 광주방송 등 지역 민영방송 출범하였다. 2000년 지역민방의 지역성 확립을 위해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을 제한하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규제’가 신설되었다. 이후 2004년 방송법에 지상파DMB의 도입 근거가 신설되면서 DMB가 다른 방송의 단순 수중계가 아닌 자체편성이 가능한 온전한 매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중계 편성규제 대상에 지상파DMB를 추가하였다. 2014년에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분기’로 개정하였고, 2021년에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였다. 한편, 공동체라디오의 경우 2006년 방송법 개정으로 공동체라디오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재송신 비율 제한’ 규정을 도입하였다(방송법 제78조). 이후 2015년 방송법 개정으로 기존 제78조 제7항의 재송신 조항을 삭제하고 제69조 제11항에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3. 선행연구

지역민방 수중계 비율 제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김남두 외(2019)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규제의 간명성을 위하여, 지역민방 차등 규제의 기준으로 방송 매출액 또는 전체 매출액을 채택한다(단일 지표 원칙). 둘째, 지역민방의 분류 범주 숫자는 가급적 2~4개를 유지한다. 셋째, 매출액 구간은 직관성을 고려해 가급적 100억 단위로 설정하되, 비교 검토 등을 위해 50억 단위의 매출액 구간 설정도 허용한다. 넷째, 각 자체편성 의무비율 조정 검토안에서 자체편성 의무비율의 ‘이론적’ 하한선은 가급적 20% 이상으로, 그리고 ‘실제적’ 하한선은 21% 이상으로 설정한다. 다섯째, 가급적 모든 지역민방사가 규제완화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 조정 검토안을 제시하였다.<sup>22)</sup>

---

22) 김남두 외(2019), p.102-103.

## 제4절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 1. 법령 및 고시 현황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는 외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이 과도하게 특정 국가의 제작물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여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송사업자가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71조 제4항,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표 2-7>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관련 법규

<b>방송법 제71조 제4항</b>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④ 방송사업자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b>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b>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⑤ 방송사업자(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수입물을 각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수입물 방송시간의 90%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경우와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PP의 경우 편성비율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및 편성고시 제8조 단서).

### 2. 규제 연혁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제는 2000년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애니메이

선 및 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60%로 제한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 2005년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하였다. 2010년에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산정기간을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한미 FTA 타결 이후 2011년에는 편성비율을 80%로 상향하였으며, 2014년 수입물을 매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적용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다. <표 2-8>은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의 변동 현황을 보여준다.

<표 2-8>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변동 추이

구분	2001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22년
편성비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산정기간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반기	연간

- 주: 1) 2014년 6월 5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매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2)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3. 선행연구

김남두 외(2019) 보고서에서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정 국가와 관련된 외국문화를 소개하는 전문편성 PP 채널의 경우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상한제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각 분야에서 반기별 해외 수입물 편성이 매우 적은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를 면제하고 있으나, 상한선 기준(80%)에 비해 면제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문제가 있어 면제 조건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23)</sup>

심홍진 외(2020) 보고서에서 해외문화 접촉 경로 다원화, 편성권 제약, 매체 경쟁력 저하, 채널 정체성, 등록 취지 등을 감안하여 현행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 이내에서 ‘90% 이하’로 완화하고, 산정기준 또한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되, 특정 국가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1개국 영화·애니·대중음악

23) 김남두 외(2019), p.122-123.

수입물 편성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수용하여 2021년 4월 방송법 시행령 및 2021년 6월 편성고시를 개정하여 1개국 수입물 상한을 ‘매반기 80% 이하’ 에서 ‘연간 90% 이하’ 로 완화하였고, 특정국가를 전문으로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하였다.<sup>24)</sup>

#### 4. 해외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규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1개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제작물을 규제하는 편성규제가 없다. 다만, 수입물 중 1개 국가의 제작물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경우 자국 대중가요(대중음악)에 대한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어 수호와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Toubon Law(La Loi Toubon/law 94-665)」를 제정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주력 방송시간대(평일 6:30~22:30 또는 주말 8:00~22:30)에 라디오에서 방영하는 프랑스 대중가요 비율이 최소 40%이어야 하며 이중 절반은 신규 가수 혹은 프로덕션이 제작한 노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5)</sup>. 프랑스 대중가요는 프랑스어 또는 프랑스 내 지방어로 표현된 곡으로 프랑스인이 영어로 부른 곡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방송되는 프랑스어 노래의 50% 이상이 동일한 10곡을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10곡은 쿼터제 계산 시 제외된다.<sup>26)</sup> 이후 프랑스는 최신 가요를 주로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채널에서 법정 쿼터를 맞추기 위해 소수의 인기 프랑스어 대중가요를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6년 3월부터 일부 라디오 채널에 대해 음악적 다양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프랑스어 대중가요 쿼터를 40%에서 35%로 하향 조정하였다.<sup>27)</sup>

---

24) 심홍진 외(2020), p.69.

25) “We don’ t need content quotas” , The Conservative, Apr 7, 2021, accessed Dec 30, 2021, <https://theconservative.online/article/we-dont-need-content-quotas>.

26) 김남두 외(2019), p.142.

27) “Les quotas francophones à la radio ont été assouplis… mais la bataille continue” , Telerama, Mar 23, 2021, accessed Dec 30, 2021, <https://www.telerama.fr/radio/les-quotas-francophones-a-la-radio-ont-ete-assouplis-mais-la-bataille-continue,140122.php>.

## 제5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 1. 법령 및 고시 현황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애니메이션 창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방송 법규는 지상파방송사, 종편PP, 애니메이션 편성 PP(이하 애니전문PP<sup>28</sup>)에 대해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신규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71조 제3항,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제4항).

〈표 2-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관련 법규

<p><b>방송법 제71조 제3항</b></p>	<p>③ 지상파 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p>
<p><b>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제4항</b></p>	<p>③ 법 제71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p> <p>④ 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p>

28)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표 2-10〉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파 방송사(지역방송 제외), 종편PP, 애니전문PP<sup>29)</sup>는 해당 채널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표 2-1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비율

지상파		종편PP*	애니전문PP*	지상파DMB
KBS·MBC·SBS	1%이상	500억원 미만 : 0.3%	50~100억원 미만: 0.3%	0.1% 이상 (시행유예)
EBS	0.3%이상	600억원 미만 : 0.5%	150억원 미만: 0.6%	
		700억원 미만 : 0.7%	200억원 미만: 0.8%	
		700억원 이상 : 1%	200억원 이상 : 1%	

\*편성고시 제4조 제4항 및 제5항 참조

한편,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 주시청시간대<sup>30)</sup>에 편성하는 경우 실제 편성시간의 150%로 인정받는다(편성고시 제11조 제3항).

## 2. 규제 연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지상파 3사와 EBS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10년 어린이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을 편성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2년에는 의무편성 대상을 종편PP와 애니전문PP까지 확대하였다.

29)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PP(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30) 평일: 7시~9시, 17시~20시; 주말 및 공휴일: 7시30분~11시, 14시~20시, 이하 어린이 주시청시간대(편성고시 제11조 제3항)

〈표 2-1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추이

구분	대상	2000년	2001년	2002년	2005	2008	2011	2012 ~현재
국내 애니메이 션 신규 의무 편성 (전체 방송시간, 연간)	지상파 3사	-	-	-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EBS	-	-	-	0.3% 이상	0.3% 이상	0.3% 이상	0.3% 이상
	지상파 DMB	-	-	-	0.1% 이상 (유예)	0.1% 이상 (유예)	0.1% 이상 (유예)	0.1% 이상 (유예)
	중편PP	-	-	-	-	-	-	0.3~1% 이상
	애니전문 PP	-	-	-	-	-	-	0.3~1% 이상
고시일	2000. 5. 26.	2001. 3. 23.	2003. 1. 8.	2005. 1. 22.	2008. 12. 31.	2011. 12. 2.	2012. 7. 18.	

주: 1) 애니메이션 PP는 전체 방송시간 중 애니메이션 편성시간이 50%를 넘으면서 전년도 방송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PP로 한정.

2)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편성고시는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

자료: 성육제 외(2008), 주성희·김정희(2017), 심홍진·김정희(2019, 2020)

### 3. 선행연구

김남두 외(2019) 보고서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 관련하여 세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를 유지하되, 지상파 3사 등에 대해 실질적인 편성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과 둘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를 폐지하고 이를 (국내제작)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총량제로 대체하자는 의견, 마지막으로 방송업계와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의 상생과 경쟁력 있는 애니메이션 유통 경로 개발을 위해서는 편성규제의 유연화 및 진흥 정책의 병행이 필요함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지상파 3사와 중편 PP)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에 상당하는 노력’을 투입할 경우 해당 편성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방송법에 신설하자는 의견이다.<sup>31)</sup>

31) 김남두 외(2019), p.114.

심홍진 외(2020) 보고서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상 변화, 애니메이션 시청경로 및 시청방식의 다변화, 규제 중복 가능성(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 신규 의무 편성), 편성권 저해,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도 현행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비율을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완화 방안과 애니메이션 사업자 진흥 방안은 각 사업자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 협의에 기초하여 유관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up>32)</sup>

---

32) 심홍진 외(2020), p.68.

## 제 6 절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 1. 법령 및 고시 현황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는 독립 영상제작사를 육성하여 국내 방송영상물 제작시장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제작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방송법령과 편성고시는 지상파방송사와 종편PP를 대상으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편성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표 2-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상파방송사와 종편PP는 방송법규에 따라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과 주시청시간대<sup>33)</sup>에 일정 비율 이상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방송법 제72조, 시행령 제58조). 여기서 순수외주제작은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TV)을 의미한다.

〈표 2-12〉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규제 관련 법규

<b>방송법 제72조</b>	<p>제72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해당채널의 전체 방송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p> <p>② 삭제</p> <p>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p>
<b>방송법 시행령 제58조</b>	<p>제58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p>

33) 주시청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오후 7시~오후 11시 시간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오후 6시~오후 11시 시간대(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를 의미한다.

<p>② 삭제</p> <p>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 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편성 비율 산정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 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

한편, <표 2-12>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을 전체방송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로 구분하여 방송사업자별로 의무편성 비율 현황을 정리하면 <표 2-13>과 같다.

<표 2-13>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현황

구분	KBS1	KBS2	MBC	SBS	중편PP	EBS	지역 MBC	기타 지상파 (지역민방)	지상파PP
전체 방송시간 (매반기)	19% 이상	35% 이상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16% 이상	20% 이상	3.2% 이상	3.2% 이상 (시행유예)
주시청 시간대 (매반기)	10% 이상	-	10% 이상	10% 이상	3% 이상 (시행유예)				

또, <표 2-14>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순수외주 편성비율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받는다(편성고시 제11조 제5항~제7항).

<표 2-14>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산정시 가중치 규정

구분	가중치
<p><b>편성고시 제11조 제5항</b></p> <p>제9조제1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본을 공유하는 경우</p>	<p>편성시간의 110%</p>
<p><b>편성고시 제11조 제6항</b></p> <p>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교양분야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p>	<p>편성시간의 110%</p>

<p><b>편성고시 제11조 제7항</b></p>	<p>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p>	<p>편성시간의 130%</p>
-----------------------------	--	-------------------

- 주: 1) 제5항: 전체방송시간 기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시 적용되는 가중치  
 2) 제6항 및 제7항: 전체방송시간 기준 및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시 모두 적용되는 가중치

## 2. 규제 연혁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규제는 1990년 방송법 제31조에서 당해 방송국이 아닌 자가 제작하는 방송순서에 대한 편성비율 규정을 신설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 2000년 통합방송법 제72조에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주시청시간대와 특수관계자에 의한 프로그램 편성 제한을 신설하였다. 2005년 편성고시에서 의무편성비율이 개정되었고 이후 2015년까지 당해 의무편성비율이 지속되었다(표 2-15) 참조. 다만, 2010년 고시개정을 통해 편성비율의 산정기간이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되었다.

2015년에는 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2015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축소하였으며,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 편성규제를 폐지하였다<sup>34)</sup>. 2016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동년 편성고시 개정으로 방송사업자 및 채널별 의무편성 비율에 변화가 있었다(표 2-15) 참조. 이후 2019년 방송법 시행령과 편성고시 개정으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대상에 중편PP를 포함하였다.

34) 2015년 6월 22일 개정 방송법(시행 2015.9.23) 이전의 방송법에서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정의를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와 일반 독립제작사 등을 포함하여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계산하였다. 이후 2015년 6월 22일 개정 방송법(시행 2015.9.23)·동법 시행령(시행 2016.5.27) 및 편성고시(시행 2016.10.26)에서 외주제작 의무편성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방송사업자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환경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선도할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표 2-15〉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추이

구분	대상	2000년 (매월)	2001년 (매월)	2002년 (매월)	2003년 (매월)	2005년 (매분기)	2016년1) (매반기)	2019년~ 현재 (매반기)
전체 방송 시간대, 외주 제작	KBS1	22% 이상	9.30까지: 24% 이상	28% 이상	30% 이상	24% 이상	순수외주 19% 이상	순수외주 19% 이상
	KBS2		10.1부터: 26% 이상	20% 이상	20% 이상	40% 이상	순수외주 35% 이상	순수외주 35% 이상
	EBS		9.30까지: 29% 이상 10.1부터: 31% 이상	33% 이상	35% 이상	35% 이상	순수외주 30% 이상 <sup>2)</sup>	순수외주 30% 이상
	MBC/지역 MBC <sup>35)</sup> , SBS	27%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순수외주 3.2% 이상	순수외주 3.2% 이상
	기타 지상파사업자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순수외주 3.2% 이상	순수외주 3.2% 이상
	종편PP	-	-	-	-	-	-	순수외주 30% 이상 <sup>3)</sup>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18% 이하	18% 이하	20% 이하	21% 이하	21% 이하	<삭제>	<삭제>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6% 이상	8%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순수외주 10% 이상 (지상파)	순수외주 10% 이상 (지상파, 종편PP)	
고시일	2000. 5. 26.	2001. 3. 23.	2002. 4. 9.	2003. 1. 8.	2005. 1. 22.	2016. 10. 26.	2019. 6. 17.	

주: 1) 2016년 10월 26일 고시 개정전,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PP는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21%를 초과하여 특수관계자 제작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2) MBC와 SBS의 경우 편성고시 부칙 제2016-9호 제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17년까지는 35%이상,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2% 이상, 2020년부터 30% 이상의 비율을 적용한다.  
 3) 2019년 6월 17일 고시에 따른 종편PP의 순수외주 편성규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자료: 성육제 외(2008), 심홍진·김정희(2019, 2020)

35) 2021년 6월 29일 편성고시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지역MBC는 2022년 1월 1일자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2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

### 3. 선행연구

김남두 외(2019) 보고서에서 첫째, 전체 방송시간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와 관련하여 ① 방송시장 내 영향력 감소 및 경영상태 등의 이유로 지상파 3사에 대해서 의무편성 비율을 일정 정도 낮추는 것을 고려 ② 지역민방 사업자에 대해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3.2%)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을 폐지할 경우 지역MBC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도 폐지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 ③ 편성고시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을 적용받게 된 종편 PP에 대해서는 향후 지상파 3와 동일한 의무편성 비율을 적용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주시청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와 관련하여 주시청시간대 기준 의무편성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라고 판단하였으며 외주제작 관련 의무편성 제도의 변화가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향후 1~2년 동안 지상파 3사의 편성 현황을 점검한 후 특이사항이 없다면 주시청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sup>36)</sup>

심홍진 외(2020) 보고서에서는 첫째, 전체 방송시간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관련하여 OTT 서비스 등 방송 외부 환경의 변화,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정책목표의 성취도, 프로그램 포맷의 진화, 오락 프로그램의 공익적 속성 등을 감안하여 주시청시간대의 순수외주 편성시간 110% 인정 범위를 주시청시간대 ‘교양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주시청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관련하여 주시청시간대 비율 규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플랫폼의 다양화 및 시청행태 변화, 이중규제(전체 방송시간대 비율, 주시청시간대 비율)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권 저해, 주시청시간대 의무편성비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주시청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규정을 폐지를 제안하였다. 셋째, 지역방송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관련하여 순수외주 규제 충족을 위한 과도한 수증계 의존, 지역방송의 어려운 경영상황과 열악한 외주제작환경, 자체제작을 통한 지역성 구현이라는 지역방송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방송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sup>37)</sup>

---

36) 김남두 외(2019), p.111-112.

#### 4. 해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유럽연합의 경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제17조<sup>38)</sup>에 의해 뉴스·스포츠행사·계입·광고·텔레텍스 서비스·텔레쇼핑 시간을 제외한 총 방송시간(또는 총 제작비) 대비 10% 이상을 유럽산 외주제작물로 편성하도록 하며 대부분 회원국이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회원국은 지침에서 규정한 의무편성 비율 10% 이상을 도입하였으며, 회원국 중에서 핀란드가 19%로 가장 높은 비율로 규정하였다.

〈표 2-16〉 EU 회원국별 EU 외주제작물 편성 비율

국가	EU 외주제작물 (EU Independent Works)
EU	방송시간(또는 총 제작비)의 10% 이상
크로아티아	10%
프랑스	없음(투자 제한有)
독일	10%
아일랜드	10%
이탈리아	없음(투자 제한有)
네덜란드	10%
폴란드	10%
스페인	10%
영국	10% (의무투자에 대한 대안)

주)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의무편성 비율을 도입하지 않고 투자 의무를 요구함  
 자료: Cullen International(2021)

37) 심홍진 외(2020), p.68.

38) 2010/13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rticle 17 Member States shall ensure, where practicable and by appropriate means, that broadcasters reserve at least 10 % of their transmission time, excluding the time allotted to news, sports events, games, advertising, teletext services and teleshopping, or alternately, at the discretion of the Member State, at least 10 % of their programming budget, for European works created by producers who are independent of broadcasters. This proportion, having regard to the broadcaster's informational, educational, cultural and entertainment responsibilities to its viewing public, should be achieved progressively, on the basis of suitable criteria. It must be achieved by earmarking an adequate proportion for recent works, that is to say works transmitted within 5 years of their production.

영국은 1982년 외주제작 전문채널인 채널4의 설립으로 외주제작물의 안정적 유통창구가 마련되었고, 1993년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 PSB) 채널에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도입하였다.<sup>39)</sup> 이후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은 (1) 영국의 방송통신규제 기관인 OFCOM이 각 PSB 채널에 대해 최소 25%의 독립 영상제작사 외주제작물 쿼터를 부여하도록 하고(제277조), (2) PSB 사업자는 외주제작 거래에 적용되는 실천강령을 제·개정하여 OFCOM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OFCOM은 실천강령 관련 가이드라인(guidance)을 제·개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285조). 또한, OFCOM은 실천강령 가이드라인을 통해 PSB가 제작사와 협상 체결 시 고려해야할 필수 요소들을 규정하여, 방송사-독립영상제작사 간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2019년 12월 제정된 「독일 미디어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협약(MStV)」에 의하여 상당한 비중으로 독일어권 또는 유럽국의 외주제작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독립적인 제3자가 제작한 ‘윈도우 프로그램(window program)’<sup>40)</sup>에 대하여 매주 260분 이상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방송사 규모·전문채널별로 차등화하여 외주제작비 의무투자비율이 부과되고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은 없다.<sup>41)</sup> 방송사별 연매출 약 3.2%(PSB의 경우 3.5%)를 유럽산 영화에 투자하며 그 중 75%를 독립외주제작 프로그램에 할애할 의무가 있다. 또한, 방송사별 연매출 약 15%를 유럽산 시청각콘텐츠에 투자하며 그 중 약 70%를 독립외주제작 프로그램에 할애할 의무가 있다.

일본은 영국, 프랑스와 달리 외주제작에 대한 제도적 규제장치 없다. 지상파방송국의 외주비율이 높은 편이며 민-민 주도형 외주시장 발달되어 있다.<sup>42)</sup>

---

39) 김남두 외(2019), p.138.

40) 윈도우 프로그램(window program; Fensterprogramme): 제작 및 편집의 독립성이 보장된 제3자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

41) 윤석년 외(2011), p.35.

42) 조준상(2013), p.73.

# 제 3 장 현행 편성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제 1 절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 1.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관련 문제점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문제점은 여러 선행연구(예: 성욱제 외, 2008; 주성희·이주영, 2016; 주성희·김청희, 2017; 김남두 외, 2019; 심홍진·정은진, 2020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

첫째, 최근 방송 콘텐츠 장르 간 혼합, 혼종 또는 융합 현상이 심해지면서 교양과 오락을 구분하는 장르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규제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보와 오락이 뒤섞이면서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장르가 등장했고 교육과 오락이 결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장르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방송 포맷이 진화하고 장르가 융합하면서 교양과 오락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편성규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 또한 낮다(배진아, 2020; 심홍진·정은진, 2020). 더욱이 새로운 포맷의 개발은 방송이 진화하고 제작자의 창작 욕구가 고양됨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동 편성규제는 제작진의 창의성은 물론 시청자의 볼 권리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 나아가 동 편성규제가 다채롭고 자유로운 콘텐츠 제작을 제약하여 ‘다양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는 한편,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둘째,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제한하는 동 편성규제의 기저에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도와 교양 프로그램에 비해 ‘공익적이지 못한 콘텐츠’로 바라보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양질의 오락 프로그램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저품질의 교양 프로그램도 있다(배진아, 2020). 최근 들어 오락성은 프로그램 품질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공익성과 오락성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며 프로그램의 공익성 여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질과 완성도로 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방송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동 규제를 적용한다면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국내 방송산업의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다. 더욱이 OTT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는 동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향유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에게만 오락물 편성을 제한하는 동 규제는 비대칭 규제로 작용하여 국내 방송사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방송산업 전반의 침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OTT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드라마·예능 등 오락 프로그램이 콘텐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장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동 규제는 소수의 지상파 방송이 유일한 영상매체이던 시기에 채널 내 다양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방송매체로만 오락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글로벌 OTT 서비스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오락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매체에만 한정된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보편화한 현재의 다매체·다채널 미디어 환경에서는 부적합한 규제이다.

## 2. 규제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

연구진은 전술한 문제점에 대해 현행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 초안을 연구반에 제시하였다. 다만 동 규제를 폐지하되 한국방송공사(KBS)는 규제 폐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였다. 한국방송공사는 공적재원인 수신료로 운영됨에 따라 다른 방송사업자에 비해 공적 책무가 무겁기 때문에 동 규제의 규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동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재허가·재승인 및 방송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도·교양·오락 분야에서의 조화로운 편성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반과 논의하였다. 연구진은 재허가·재승인을 이용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조화로운 편성 유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연구반에 재허가·재승인 유인 예시를 제시하였다(〈표 3-1〉 참조). 한편, 방송평가는 주시청시간대에 특정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오락 편성비율을 평가하고 있다(〈표 3-2〉 참조).

〈표 3-1〉 재허가·재승인 통한 조화로운 편성 유인 예시

예시 1	재허가·재승인 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심사항목을 두고 배점으로 평가
예시 2	재허가·재승인 시 허가조건으로 방송사에 보도·교양·오락의 조화로운 편성 계획을 제출 및 준수하도록 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표 3-2〉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방송평가)

평가척도	배점	
	지상파TV (50점)	중편PP* (40점)
오락 분야 최대 편성비율 평가	25점	
보도 분야 최대 편성비율 평가	25점	

주: \*중편PP 점수 산정 방식: 지상파 5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하여 최종점수 산정

자료: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2021. 12.)」에 따른 방송평가 세부기준(2021)

연구반은 개선안 초안에 대해 밀도 높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먼저, 연구반은 연구진이 제시한 개선안과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 의견은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서는 동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른 방송사는 동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조화로운 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및 방송평가를 실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연구반은 또 한국방송공사는 공적 재원인 수신료로 운영되므로 조화롭고 균형된 편성을 유지하도록 사회문화적 책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연구진의 개선안에 동의하였다.

둘째, 연구반은 방송사가 채널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당 의견은 종합편성 채널의 정의를 보도·교양·오락의 다양한 장르를 균형 있게 편성하는 것임에도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종합편성 채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반영이다. 결과적으로 동 규제는 채널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당 규제에 대한 수요자(방송사업자)의 강력한 폐지 요구가 없는 현재 상황을 감안

할 때, 굳이 동 규제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업자가 조화로운 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및 방송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위원들 사이에 다소 의견이 나뉘었다. 현행 방송평가 제도 활용에 동의하는 위원들은 방송평가 제도는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을 위해 정례적 평가를 받는 지표이므로 별도의 방송평가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없어 방송사에 특별히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즉 이미 주시청시간대의 조화로운 편성을 위한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방송평가 항목이 존재하므로, 이 항목을 통해 조화로운 편성을 일정 부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반면, 일부 연구위원은 기존 제도 활용이 아니라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상술한 예시 2처럼 재허가·재승인의 허가(승인)조건으로 방송사에 편성 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규제 신설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방송사업자에게 법적 규제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 일부 위원은 예시 2는 협약체결과 유사하다면서, 협약체결은 공영방송에서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시 2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면, 방통위가 민영방송사에 대해서도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일부 위원은 협약체결은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모든 책무를 명시하는 것인데 반해, 예시 2는 민영방송에 대해서 동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3개 분야에 대한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협약체결과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예시 2가 엄중해 보일 수 있으나 일본의 NHK처럼 보도·교양·오락 편성의 자율성을 방송사에 부여한다는 점을 들어 예시 2는 방송법의 오락 분야 60% 이하 편성 규제보다 완화된 조치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예시 2에 대한 위원들의 엇갈린 견해에 비해, 위원들은 예시 1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예시 2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예시 1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조화로운 편성을 위한 조치로 방송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다만, 예시 1의 평가지표가 비계량(정성) 지표라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일부 위원은 동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규제 부담을 더하지 않고 동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

직한 규제 개선 방향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연구위원들은 동 규제의 폐지가 지역 지상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하였다. 동 규제가 폐지된다면, 지역 지상파의 보도 부문 편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지상파는 종합편성방송사업자로서 매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동 규제가 폐지된다면 지역방송은 열악한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락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함으로써 시청률 위주의 편성전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세한 지역방송은 보도 프로그램 제작인력과 조직을 해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지역방송은 지역성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하는 보도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오락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함에 따라 지역 지상파의 정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제 2 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 1.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관련 문제점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 분야 편성규제는 전문편성 사업자들이 전문 분야 외의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규제에 따라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을 특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동 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매체 간 규제 차등화의 정당성이 희박하고 근거가 불명확하여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전문편성 지상파인 EBS는 주된 방송 분야를 ‘60%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지만, 전문편성PP인 낚시채널은 주된 방송 분야를 ‘70%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여러 장에 걸쳐 검토한 지상파 대상 규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통상 허가 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동 규제는 유료방송에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규제 형평성과 동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OTT 서비스 대비 유료방송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둘째, 다매체·다채널 및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분야의 다양성 확보는 일정 정도 달성되었다. 따라서 동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유료방송 시장 내 경쟁과 방송사업자의 채널 정체성 및 시청자 확보 노력 등으로 인해 방송 채널 및 내용의 다양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김남두 외, 2019; 심홍진·정은진, 2020).

셋째, 전문편성PP의 주된 방송 분야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점도 동 규제의 문제점이다. 전문편성PP는 주된 방송 분야를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고 등록 절차를 밟는데, 사업자에 따라 분야를 모호하게 기록한 경우가 많아 해당 채널의 주된 분야, 즉 채널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배진아, 2020).

끝으로, 주된 방송 분야 편성비율에 대한 규제가 전문편성PP의 창의적 시도와 도전을 제약하면 매체 경쟁력은 약화한다. 전문편성PP는 방송환경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고 시

청자의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포맷을 개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및 편성해야 한다(심홍진·정은진, 2020).

## 2. 규제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

연구진은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 분야 편성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사전 공유하였다. 문제점은 상기한 내용들이다. 개선안은 규제 현황에서 살펴본 바 있는 SO·위성, PP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된 방송 분야 편성비율을 현행 매 반기 70% 이상에서 매 체 간 구분 없이 매 반기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었다. 연구진은 사전 공유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시한 개선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반에서는 동 규제의 문제점 해소 방안 및 연구진의 개선안을 긴밀하게 논의하였다. 연구반 회의에서 논의를 마친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이메일로 의견을 추가 수렴하였다.

위원들은 연구진이 제시한 주된 방송 분야의 문제점에 대체로 동의하는 한편,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였다. 그러나 동 규제 개선의 방향성, 즉 동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 간에 이견이 있었다.

동 규제의 완화에 찬성하면서 연구반은 동 규제의 완화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공공채널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반은 동 규제를 완화하면 전문PP가 주된 분야의 편성 비율을 낮출 수도 있는 만큼 방송 전반의 다양성<sup>43)</sup>과 다원성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전문성과 채널 정체성이 뚜렷한 공공채널로 해소하고, 공공채널의 운영은 정부지원으로 해결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반면, 동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위원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규제는 전문편성PP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일정 수준의 편성비율을 강제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

---

43) 전문PP는 낚시, 바둑, 골프 등 방송하고자 하는 특정(주된) 분야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및 등록을 한다. 특정 전문PP는 특정 분야를 주로 편성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고, 이는 특정 분야의 채널 정체성으로 전환된다. 다수의 전문PP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동반한 채널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야의 다양성뿐 아니라 방송 전반의 다원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배진아, 2020).

치이다. 이러한 동 규제의 도입 취지로 볼 때 규제 존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규제 기관이 장르의 모호성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의 규제 회피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된 방송 분야에 대한 판정의 모호성 또한 주된 방송 분야 등록서의 보완과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전문편성PP의 주된 방송 분야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된 방송 분야의 분류 기준을 방송사업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주된 방송 분야가 무엇인지를 등록서에 충분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 중앙전파관리소의 ‘주된 방송 분야 확인 자문위원회<sup>44)</sup>’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주된 방송 분야를 명확하게 판정 또는 규정할 수 있다.

한편, 동 규제의 완화 또는 유지 여부는 프로그램 다원화 정도가 결정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규제 당국이 현재의 방송환경이 별도의 전문편성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원화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면 동 규제를 완화, 더 나아가 폐지해야 하지만, 반대로 다원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동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

44) 주된 방송 분야 확인 자문위원회는 방송법 제69조제4항 및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편성한 주된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주된 방송 분야 확인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중앙전파관리소가 주된 방송 분야 확인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문을 수행한다.

### 제3절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수중계 편성규제)

#### 1. 수중계 편성규제 관련 문제점

수중계 편성규제는 지역방송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기한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제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상술한 바와 같이 동 편성규제는 방송의 지역성 확보가 도입 목적이다. 그럼에도 현행 의무비율 제도는 지역방송사에 직접 자체제작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성 구현과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표 3-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편성비율은 수중계 편성 평균비율 70.1% 대비 14.7%이다. 지역방송사가 자체제작으로 지역성을 구현하고 지역민에게 지역문화를 함양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

<표 3-3> 지역민방 편성비율 현황(2019년)

구분	편성비율(%)		자체편성비율 구성 현황(%)			
	수중계	자체편성	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구매
케이엔엔(KNN)	67.9	32.1	21.7	9.5	0.9	0.0
티비씨(TBC)	67.7	32.3	21.9	6.5	3.6	0.2
광주방송	68.2	31.8	17.4	8.5	2.7	3.2
대전방송	67.9	32.1	14.7	9.2	6.4	1.7
울산방송	70.4	29.6	12.5	7.1	4.3	5.7
전주방송	70.2	29.8	12.5	9.3	7.0	0.9
청주방송	70.1	29.9	11.3	13.4	0.0	5.1
지원(G1)	75.5	24.5	10.5	10.4	2.3	1.3
제주방송	73.2	26.8	9.9	3.8	10.9	2.1
평균	70.1	29.9	14.7	8.6	4.3	2.2

주: 자체편성 = 자체제작 + 공동제작 + 외주제작 + 프로그램 구매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20)

둘째, 동 규제는 매체 간 편성비율 산정 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 매체 간 비대칭 규제라는 지적을 받는다. 동 규제의 관련 법규(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2, <표 2-5> 참조)에 따르면, 지역민방·DMB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 기간은 ‘매반기’ 인 반면, 공동체라디오는 산정기간을 ‘매월’ 로 적용받고 있어 비대칭 규제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

## 2. 규제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

연구진은 수중계 편성규제에 관해서는 논의 진행 방식을 달리하였다. 동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사전에 공유하는 대신 연구반에서 개선사항을 직접 논의하였다. 이는 동 규제와 관련한 규제개선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결과 정책 개선사항<sup>45)</sup>이 시행되는 시기(2022년 1월 1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정책개선 효과를 유의미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법적 안정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진은 규제 개선안을 사전에 특정하여 공유하기보다, 상기한 문제점과 더불어 동 규제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 방안을 연구반과 함께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연구위원들은 동 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지역방송 관련 정책이 지역방송에 지나치게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역성은 중요하고 마땅히 보호할 중요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수반하지만, 현재 지역방송의 목소리가 때론 관계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지역방송과 관련한 정책 전환은 규제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지역방송의 방송권역을 광역화하여 자체제작 능력을 신장해야 한다. 지역방송의 악화된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방송의 방송권역 확정을 현행보다 광역화함으로써 지역방송의 시장규모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광역화를 통해 제작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지역방송의 자체제작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실제로 MBC 강원영동(강릉, 삼척), MBC충북(청주, 충주) 등 일부 지역방송사는 방송사 간 통합을 통해 부족한 제작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지역방송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변상규, 2018).

셋째, 동 규제는 의무편성비율의 근거가 되는 방송사업매출액 구간이 지나치게 세분화

---

45) 2022년 1월부터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허가차수’ 에서 ‘방송사업매출액’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편성고시를 시행함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반은 동 규제가 지역민방의 규모를 고려하여 방송사업매출액 구간을 합리적으로 나눔에 따라 지역방송이 자사의 수중계 비율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다만, 규제 방식이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향후 동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방송 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규제 구간을 2-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다수의 연구위원들은 동 규제를 자체제작 편성비율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 규제는 여전히 사업자의 매출액 현황으로 수중계 구간 및 비율을 정하는데, 이보다는 지역민방의 자체제작 편성비율을 기준으로 동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자체제작 편성비율 기준으로 동 규제를 개선하면, 지역민의 관심사를 반영한 소재와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렇게 자체제작한 지역 친화 콘텐츠는 지역방송의 도입 취지인 지역성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 제4절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 1.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규제 관련 문제점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규제는 소수의 지상파 방송채널이 해외 콘텐츠 공급의 유일한 창구이던 시기에 수입물 국적의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규제이다. 이에 따라 동 규제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 편성이 과도하게 특정 단일 국가의 제작물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규제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환경변화로 인한 동 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OTT 서비스 등 이용자가 해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경로가 증가함에 따라 동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이용자는 유튜브나 글로벌 OTT 서비스를 이용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하여 멕시코나 스페인, 터키 등 제3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약 없이 이용하고 있다.

둘째, 동 규제 외에도 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국내 제작물 의무편성 규제가 복수로 존재함에 따라 사업자에게 규제 부담으로 작용한다. 방송사업자는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규제를 준수하면서 1개국 수입물 비율 제한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동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제3국 콘텐츠를 부득이하게 추가 수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방송사 편성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는 동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방송사의 초기 편성계획과 무관하거나 편성전략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구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동 규제는 방송사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무엇보다 동 규제는 방송사업자가 목표시청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편성계획이나 편성전략을 제한함으로써 편성의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넷째, 다매체, 다채널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를 제약하면서까지 동 규제의 준수를 강제할 근거가 미흡하다. 1개국 수입물 규제의 목표는 국내제작물 규제처럼 ‘국내 문화정체성 보호’가 아니다. 오히려 동 규제는 부차적 가치라 할 수 있는 ‘다양한 해

외문화의 공급'을 방송사업자에게 규율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마지막으로 동 규제는 국내 방송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현재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는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하여 블록버스터 콘텐츠를 제작, 편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OTT 서비스는 편성규제로부터 자유롭다. 글로벌 OTT 서비스의 가파른 성장세와 규제 우위를 감안할 때, 국내 방송사에만 1개 국가 수입물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 격화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 2. 규제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

연구진은 다른 규제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이 수반하고 있는 문제점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연구반과 공유하였다. 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동 규제의 문제점을 공유하였고, 동 규제 개선안의 주된 내용은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폐지'였다.

연구반에서 동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두고 검토한 결과, 연구진이 제시한 개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위원진이 제시한 동 규제의 폐지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다양한 국적의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전문채널이 다수 존재하는 현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동 규제 존속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동 규제의 폐지가 바람직하다. 더불어, 동 규제는 과거 지상파방송사가 미국 중심의 해외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시청자에게 독점 공급한 상황을 반영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이 이용자가 자유롭게 해외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변모한 만큼, 규제 또한 이러한 변화상을 반영하여 현행화가 필요하고, 현행화는 규제의 폐지가 적절하다.

둘째, 해외는 동 규제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반은 해외 규제 사례를 살펴 보아도 자국 사업자와 자국 콘텐츠의 보호에는 관심을 두지만, 특정국 해외 사업자(예: 미국 등)의 지나친 성장을 우려하여 특정 국가의 콘텐츠를 동반 편성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예는 없다.

## 제5 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 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관련 문제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애니메이션 창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규제에 관해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방송산업은 OTT 서비스 등 각종 경쟁 매체의 등장으로 전통적 방송사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추세이며, 경영 악화 등 내외부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지상파 등 전통적 방송매체가 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을 책임지고 지원할 만한 여력이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방송사업자는 동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비용과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심홍진·정은진, 2020).

둘째, 이용자의 애니메이션 시청행태 변화와 애니메이션 공급 플랫폼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지상파와 종편PP는 더 이상 애니메이션 소비의 주요 창구로 기능하지 않는다. 실제로 VOD, OTT 서비스 등이 보급되면서 애니메이션의 시청 경로가 다변화하였으며, 지상파·종편PP의 애니메이션 시청률은 0%에 수렴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상파 4사의 애니메이션 평균시청률<sup>46)</sup>은 0.29%로 나타났으며, 종편PP 4사 평균시청률 또한 0.1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상파 4사의 애니메이션 시청률 추이를 살펴보면, 동 규제가 도입된 2005년에 2.4%이던 평균시청률이 종편PP까지 의무편성 대상을 확대한 2012년에는 0.9%로 하락하였고, 급기야 2020년에는 0.29%를 기록하였다. 저조한 시청률은 결과적으로 지상파와 종편PP가 애니메이션의 주 시청 경로로 기능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가 시청자 수혜에 기여하는 효과 또한 미약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셋째, 방송법 시행령은 종편PP나 애니PP와 달리 지상파 3사(EBS 제외)에 대해서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1% 이상 신규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종편PP와 애니PP는 매출액에 따라 의무비율이 차등 적용되나 지상파 3사에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로 규정

---

46) 2005년, 2012년, 2020년 시청률은 지상파의 협조를 받아 당해 연도별 실제 애니메이션 평균시청률을 산출한 수치임

함으로써 규제 형평성을 잃고 있다. 또한 EBS·종편PP·애니전문PP의 의무비율은 고시 위임(〈표 2-9〉 참조)인 반면, 지상파 3사의 의무비율만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 차원뿐 아니라 매체 간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넷째, 동 규제는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방송법 제71조 제3항<sup>47)</sup>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비율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려면 동 방송법을 위임받은 방송법 시행령이 지상파방송사에게도 종편PP나 애니PP와 마찬가지로 시청률이나 매출액을 고려하여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

끝으로, 애니메이션 분야에 복수의 편성규제가 존재한다. 방송사업자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규제(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일정 비율 이상 편성 의무)와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규제(전체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의무)라는 규제 중복에 더하여 1개국 수입 애니메이션 비율 제한까지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는 방송 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규제의 경우 애니메이션 장르를 전체 편성에 반드시 포함할 것<sup>48)</sup>과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김남두, 2018; 배진아, 2020; 심홍진·정은진, 2020).

이에 동 규제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애니메이션 장르의 편성을 강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편성기회를 줄이고, 방송사의 방송편성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

47) 방송법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48)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규제는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애니메이션을 편성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제인 반면,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규제는 전체 방송시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정시간 이상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야 한다.

## 2. 규제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

###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개선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연구반 논의 절차를 차례로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검토되었다. 단계적 검토를 추진한 이유는 동 규제가 여러 편성규제 가운데 이해관계자 간 이해 상충이 가장 첨예한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진은 합리적이면서도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동 규제 개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sup>49)</sup>와 함께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진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등에 관해 이해관계자와의 논의에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수렴한 뒤 이를 연구반에서 제시하고 해당 개선 방안의 타당성, 합리성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한편, 애니메이션 편성규제에 대한 각 측 입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sup>50)</sup>은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외에 방송평가 항목 등 애니메이션 편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개진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방송사 특히 지상파 측은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 규제에 대해 매체 간 규제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3사는 현재 시행령으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그 외 방송사업자는 시행령 하위 편성고시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고시는 시행령보다 상대적으로 개정이 쉽기 때문에 비지상파 방송사업자들보다 지상파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즉, 지상파 3사와 나머지 방송사업자 간에 규제가 비대칭적으로 적용되어 규제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방송사 측에서는 애니메이션 시청행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 주시청시간대<sup>51)</sup>

---

49) 한국방송협회(지상파방송사업자를 대표하여 참석), EBS, JTBC(종편PP를 대표하여 참석), 투니버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등 동 규제와 관련한 지상파, 종편PP, 애니전문PP, 애니메이션협회 참석

50) 이해관계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촉진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명을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을 것을 밝힌 바 있음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린이 주시청시간대는 채널 선택권이 없는 13세 미만 아동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어린이의 실제 가시청시간대를 근거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주시청시간대는 어린이들의 시청시간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방송사 측에서는 오늘날 저학령 아동들은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 평일/주말의 12시부터 13시 사이에 시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시간을 고려하여 어린이 주시청시간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활 패턴이 변화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시청하는 시간대가 19-21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어린이 주시청시간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시에서 21시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방송사 측에서는 동 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급격하게 확산된 비실시간 VOD 서비스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시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시청자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정비<sup>52)</sup>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부 종편 PP 측에서는 규제 형태가 아닌 진흥 시각에서의 접근 및 공·민영 차등 규제<sup>53)</sup>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중 공·민영 차등 규제란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가 산업 진흥이라는 공적 책무를 주로 부담하도록 하고, 민영방송사는 자유롭게 창작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작 및 편성 여건 조성을 골자로 하는 규제체계 정비를 지칭한다.

한편, 이해관계자들은 동 규제의 정비와 직접 연관은 없으나 방송평가 영역 중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표 3-4>는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영역의 평가항목과 배점 방식을 보여주는데, 현행 방송평가는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과 함께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모두 평가하고 있다.

51) 여기서 어린이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7-9시, 17-20시, 주말·공휴일 7:30-11시, 14-20시로 편성고시 제1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방송사가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해당 시간대에 편성할 경우, 편성시간의 150%로 인정한다.

52) 방송사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또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그 편성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애니메이션 진흥기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애니메이션 진흥에 활용하자는 의견

53) 향후 공·민영 차등 규제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는 산업 진흥이라는 공적 책무를 확대하고, 민영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창작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공·민영 규제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 3-4〉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평가 항목 및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지상파TV (50점)	중편PP* (40점)
07~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sup>54)</sup> 편성실적	25점	
07~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sup>55)</sup> 편성실적	25점	

\* 중편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5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배점 비율만큼 환산, 최종 점수 산정  
 자료: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21.12.)」에 따른 방송평가 세부기준(2021)

이에 대해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에서는 현재 방송사들이 ‘어린이 대상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도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용, 방송평가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방송평가의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방송평가 항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애니메이션 제작업계 측은 상기한 측면을 고려한 방송사의 편성 관행 때문에 어린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쟁력 있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구매 단계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말한다. 업계의 의견에 따르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청소년 이상의 연령대를 타겟 시청자로 하면서 기존 드라마나 예능과 최소한의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우수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항목 때문에 그 입지가 줄어들어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송평가 항목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송사

54) ‘어린이 프로그램’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정규, 특집)된 것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55)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인정된 프로그램 중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규 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과 ‘어린이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의 편성 관행이 유지되는 한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의 구조적 왜곡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방송평가도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방송사 측에서는 먼저 현행 방송평가가 어린이 프로그램과 어린이 대상 교육정보 프로그램의 편성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평가 항목이 일원화된다면 일종의 제도개선 효과를 부분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방송사 측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어린이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평가항목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방송사들이 거의 모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부분을 어린이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두 항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며 두 항목을 통합한다면 제도 간소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도 동 방송평가 항목에 따라서 방송사가 구매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유, 소아 대상의 교육용 애니메이션에 집중되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규제가 목표로 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애니메이션의 방송편성 여부가 프로젝트 수출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조건에서 방송평가 항목으로 인해 방송사들의 애니메이션 구매 수요가 유·소아 대상의 교육용 애니메이션에 집중되는 것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에서는 국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제작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방송사가 유·소아 대상 외에 청소년 프로그램까지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에 청소년 관련 항목을 마련하거나, 방송평가 항목에 13세 미만의 아동을 “어린이<sup>56)</sup>” 로 규정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항목의 폐지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다.

한편, 이해관계자들은 애니메이션 편성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첫째,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에서는 현재 EBS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구매를 확대하고, 제작투자에 대한 프로젝트의 지분을 제작사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제작투자 방식이 애니메이션업계와 방송사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방송사 측도 EBS 외 다른 방송사들도 이처럼 애니메이

---

56)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어린이” 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선 구매 지원 등을 목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방송사가 좀 더 양질의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확대 편성할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방송용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구매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 시각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그 규모와 징수 대상에 제한이 있어서 EBS 외 다른 사업자 또는 플랫폼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고, 징수 및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는 업계 간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의 현실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연구진은 이해관계자에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도 요청하였다. 방송사 측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시청자의 수요가 없는 프로그램 구매는 방송사에 부담임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제작업계는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애니메이션 제작업계는 주요 채널에서의 방송편성이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제작비 대비 현저히 낮은 방영권료를 받으면서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나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라는 규제로 인해 애니메이션의 부가가치를 인정받고 일부라도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는데, 만약 동 규제가 폐지된다면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동 규제의 완화를 논하기 전에 방송사와 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상생방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동 규제의 완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 합리성과 매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 연구진은 지상파에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비율을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업계도 현재 연간 편성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총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방송사업매출액 기준 차등 적용안의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 연구반 전문가의 개선안 검토 및 논의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파악한 애니메이션 규제 관련 쟁점과 개선안을 연구반과 공유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수정하였다.

먼저, 연구진은 매체 간 규제 형평성과 규제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단

에서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를 규율받고 있는 지상파에 대한 동 규제를 고시 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연구반 위원들은 제시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개진하였다.

첫째, 연구반은 동 규제를 방송사 측의 제안대로 고시 단으로 이관하는 데 동의하였다. 지상파사업자를 포함한 종편PP, 애니전문PP 등 동 규제 대상을 동일한 법적 계위로 규율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과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규제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더라도 시행령 단의 규제를 고시 단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규제 완화 측면에서 적절한 방향이다.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규제 개선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장기적으로 사업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분야 편성규제와 관련된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확대 여부에 대해 연구반과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반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연구반은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고시 제11조 제3항에 따라 편성시간의 150%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확대는 곧 가중치 부여대상 시간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오히려 실제 애니메이션 편성시간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어린이 주시청시간대를 확대하는 방안은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의 우려와 반대가 예상되므로 어린이 주시청시간대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연구반은 사람들의 생활 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편성규제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주시청시간대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청행태 변화를 고려할 때, 상술한 편성고시에서 규정한 어린이 주시청시간대를 애니메이션 시청 층의 실제 시청행태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반은 공·민영을 구분하여 애니메이션 편성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방송사 측 의견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련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민영 영역을 나눠서 구분하자는 일부 방송사의 제안대로 KBS, EBS 등 공영방송사에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를 유지하고, 민영방송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기금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구체적 방법론은 정책과제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둘째, 공·민영을 구분하여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민간 영역을 지원하는 것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되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 사업자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체도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미 많은 곳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군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린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송평가 항목을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반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평가 세부 기준은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개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면, 보다 현실적 방법으로 방송평가 항목을 일원화하여 동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사업자 의견수렴 논의 과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방송평가 항목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항목과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반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개념이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항목만으로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실적평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반은 실용지식이나 상식, 흥미있는 정보 제공은 결국 어린이의 성장과 정서발달,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 프로그램의 정의는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정의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일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둘째, 동 규제의 완화를 위해 방송평가까지 정비한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규제 정비라는 지적이다.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은 단순 예능이 아니라 어린이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교육적이고 좀 더 교양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동 규제를 위해 방송평가를 정비하는 식으로 규제가 변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방송평가에서 '어린이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 편성 실적' 항목을 수정하여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실적'만 평가한다 해도 방송사가 애니메이션을 어린이용으로 구매해서 지금처럼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실적과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1% 총량제를 채울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구진은 연구반에서 동 규제의 완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위원들은 대체로 동 규제의 완화에 동의하였다. 규제 완화에 동의한 위원들의 완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규제가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지상파와 종편PP에서 애니메이션의 실질 시청률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은 '공공재로서의 전파'가 시청자에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동 규제를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동 규제가 현행보다 완화되면 애니메이션 제작업계는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도 예측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제작업계는 지상파나 종편PP 방송에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여 캐릭터 사업과 관련 머천다이즈 산업까지 부파적인 파급효과가 가능하므로 동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연구반에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EBS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송되면 브랜드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주 시청층이 다른 지상파 3사, 종편PP 4사 등 다른 방송사에서 방송되면 해당 애니메이션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다. 결론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의 이러한 논리는 규제 개선을 저지하는 논리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지상파의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 비율 구간을 신설하고 종편PP의 기존 비율 구간을 현행화하는 개선안에 대해 연구반과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선안은 매체 간 규제 구간 합리성을 고려하여 지상파도 종편PP 및 애니전문PP와 같이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차등 부과하는 안이다. 다만,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으로 의무 편성비율을 차등화하되,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최종적으로는 지상파 3사의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비율이 현재와 동일하게 1%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안으로 설계하

였다. 아울러, 종편PP는 규제 도입 당시 2012년에 설정된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을 현재 시점에 맞게 현행화하여 지상파3사에 대해 설정하는 방송사업매출액 기준과 너무 동떨어진 기준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개선안에 대한 연구반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선안에 따라 지상파 3사의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비율을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하여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방송사업매출액을 고려할 때 차등 부과 후에도 1%를 유지한다면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에서도 연구진의 개선안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 개선안대로 방송사업매출액에 따라 지상파3사의 의무편성비율을 산정할 경우 방송사업매출액의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복수채널 방송사의 경우, 사업자 기준의 방송사업매출액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채널 단위의 방송사업매출액을 적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방송법 제71조제3항은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비율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선안은 지상파 3사의 의무편성비율을 1%로 일률적으로 정하였던 현행 규제와 달리 ‘매출액’에 따라 의무편성비율을 차등 부과하는 안이므로 법체계 정합성 차원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반면, 지상파 3사의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비율을 종편PP, 애니PP와 마찬가지로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화하는 개선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규제 개선안에 대한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 3사에 대한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비율을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화하는 개선안을 도입한다면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특히 사업자의 매출이 향후 어떻게 등락할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구간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둘째, 규제는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응하는 후속적 조치의 속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므로 매출 현황과 같은 미래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 제 6 절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 1.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관련 문제점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는 독립영상제작사를 육성하여 국내 방송영상물 제작 시장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제작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와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 규제 도입 당시 정책 목표인 국내 영상제작산업의 발전은 현재 외주제작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본래 의도한 규제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표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외주제작시장의 규모는 다소 부침이 있기는 하나, 사업체 수와 매출액, 종사자 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주제작시장의 성장과 함께, 최근에는 콘텐츠 제작 능력과 자본 규모 등의 차원에서 방송사보다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외주제작사가 등장하고 있다(배진아, 2020). 이러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동 규제의 정책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사들이 매체 경쟁력을 회복하고 방송시장이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3-5>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총괄 현황

연도	사업체 수 (개)	매출액 (백만 원)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백만 원)	1인당 평균 매출액 (백만 원)	종사자 수 (명)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명)
2010	475	737,092	1,552	157	4,706	10
2011	628	895,769	1,426	151	5,923	9
2012	516	984,070	1,907	143	6,886	13
2013	503	906,230	1,802	133	6,808	14
2014	496	1,051,715	2,120	155	6,782	14
2015	532	1,143,498	2,149	157	7,282	14

연도	사업체 수 (개)	매출액 (백만 원)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백만 원)	1인당 평균 매출액 (백만 원)	종사자 수 (명)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명)
2016	554	1,428,813	2,579	186	7,670	14
2017	631	1,531,422	2,427	180	8,522	14
2018	728	2,456,536	3,374	189	12,998	18
2019	658	3,171,316	4,820	236	13,453	20

자료: 방송영상산업백서(2020)

둘째,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콘텐츠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전통적 편성의 개념과 ‘시청시간대’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시청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sup>57)</sup>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 전체 방송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를 구분하여 적용되는 중첩적이고 복잡한 규제를 이어가기보다는, 규제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편성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체 방송시간대 기준의 의무 편성 규제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방송사들의 편성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 편성비율이 법정 의무 편성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규제 필요성 및 실효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표 3-6>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 편성비율 현황

(단위: %)

구분	KBS1	KBS2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평균
2018	23.5	52.1	40.0	34.1	-	-	-	-	36.6
2019	18.2	52.8	32.2	38.0	27.3	53.1	49.5	52.7	40.5
2020	17.6	47.3	26.6	36.4	24.4	47.8	42.3	49.2	37.9

자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실시결과(2018-2020)

57) 편성고시 제9조②(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드라마 부문에서만큼은 외주제작 편성규제 도입의 주된 목표였던 독립제작사 육성 및 방송 제작원의 다양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했다고 평가한다(심홍진·정은진, 2020). 이러한 정책목표의 성취가 방송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주제작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글로벌 OTT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매체 다채널 간 무한경쟁 상황에서 방송사의 자체제작 역량과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끝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지역방송은 주로 수증계와 구매 프로그램들로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을 채우고 있어 동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하고 있다. 특히 지역MBC 등 일부 지역방송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들 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간주받기 때문에 해당 제작물을 순수외주제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 2. 규제 개선안 관련 전문가 의견

###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진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연구반 논의 절차를 거쳐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유는 동 규제가 외주제작산업 및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투명한 정책 발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적 합리성은 동 규제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sup>58)</sup>와 동 규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관련 쟁점을 식별하고 개선안을 강구하였다. 연구진은 이해관계자<sup>59)</sup>와 논의하여 수렴한 개선방안을 연구반에서 심층적으로 재의하여 보완하였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당시, 연구진은 동 규제에 대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입장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요청하였다. 수렴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58) 지상파 3개사, 종편PP 4개사, 드라마제작사 1개사, 비드라마제작사 2개사, 한국드라마 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협회 참석

59)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 연구진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고서에 개별 사업자 명을 수록하지 않을 것을 이해관계자에게 밝힘

첫째, 방송사 측에서는 방송사의 특수관계자<sup>60)</sup>와 독립제작사가 외주제작계약을 맺고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역시 순수외주제작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산업 내 경쟁이 격화되면서 제작비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제작비 압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통한 제작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방송사가 특수관계자와 단독계약을 맺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서 특수관계자를 통한 제작 행태가 외주제작 비율 축소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렇듯 방송사업자는 특수관계자를 거쳐 여전히 외주제작사와 프로그램을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외주제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둘째, 방송사 측에서는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편성 실무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동 규제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방송사업자는 올림픽 등 빅이벤트가 있으면,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의무편성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산정기간이 현행 ‘매반기’에서 보다 확대된다면, 국민관심행사의 편성 등 특수상황에서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방송사업자는 산정기간이 확대 조정되더라도 실제 의무편성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앞선 의견들과 달리 일부 종편PP는 동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을 충족하면서, 동 규제를 무리 없이 준수해 왔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된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현행대로 유지되더라도 관계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연구진은 구체화된 규제 개선안 중 하나로서 “의무편성 비율의 산정기간을 현행 ‘매반

---

60)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부록 7] 참조)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부록 7] 참조)

기’에서 ‘연간’으로 변경할 때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사 측에서는 산정기간이 연간 단위로 유연하게 조정된다면 편성의 변화가 불거진 특수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방송사가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측에서는 과거 규제를 개선할 때에도 지상파·종편PP가 제시한 산정기간대로 기준을 조정할 적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동 협회는 반기가 기준인 현행 산정기간이 과거에는 분기였으며, 분기에서 반기로 산정기간을 조정할 배경을 설명하였다. 외주제작협회가 올림픽, 월드컵 등 스포츠 빅이벤트를 편성할 때 의무편성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방송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동의하면서 산정기간이 분기에서 반기로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주제작협회 측에서는 동 규제의 전체 편성비율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필요하다면 산정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연구진은 산정기준 조정과 함께, 주시청시간대의 가중치 적용대상 범위를 ‘교양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개선안과 주시청시간대의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물에 부여하는 현행 가중치를 확대 조정하는 개선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순수외주 편성비율 관련 가중치 규정은 주시청시간대에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물을 편성하는 경우에 편성시간의 110%를 인정하는데, 가중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모든 분야’의 순수외주제작물에 가중치 110%를 부여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 순수외주 편성비율 관련 가중치 규정은 주시청시간대에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물을 편성하면 편성시간의 110%를 인정하는데, 해당 가중치를 130%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진의 개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방송사 측은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물에서 ‘모든 분야’ 순수외주제작물로 가중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첫 번째 안에 동의하였다. 다만, 방송사 측은 가중치가 다른 분야로 확대되더라도 편성 행태는 현행과 동일하게 갈 것이므로 가중치 확대가 현재 편성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한

극드라마제작사협회는 첫 번째 안과 같이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순수외주제작물의 가중치 적용 대상을 ‘교양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더라도 어차피 주시청시간대에는 드라마가 주로 편성되기 때문에 드라마 분야는 편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교양 등 비드라마 분야는 실제로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비드라마 프로그램의 분량이 줄어들 수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물의 가중치를 110%에서 130%로 확대하는 두 번째 안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동 협회는 교양 분야의 순수외주제작물 가중치를 130%로 확대한다고 해서 방송사가 교양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였다. 비드라마제작사는 외주제작업계 시각에서는 교양 분야의 순수외주제작물 가중치가 늘어나면 방송사가 비드라마를 확대 편성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외주제작비가 가중치 확대와 함께 동반 상승하지 않는다면 규제개선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연구진은 가중치 관련 규제 개선안 외에도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규제 폐지”에 관한 개선안을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하였다. 앞서 규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매 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 이상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해당 개선안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방송사 측은 전체시간대 기준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규제 폐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방송사 측은 광고수익이 크게 감소한데다, 드라마 제작비는 상승일로에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사업자는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값비싼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 방송사가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은 결국 방송사의 적자 유발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방송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작비와 인건비를 감축하고, 나아가 드라마 편성까지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방송사 측은 그렇다고 드라마 편성 축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드라마 편성 축소로 방송사가 감당해야 하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사 측은 드라마 편성은 방영시간이 길어 전체시간대 기준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사 측은 이러한 구조 탓에, 방송사의 드라마 편성 편수의 감소는 온전히 외주편성 비율의 감소

로 이어지고, 방송사는 결과적으로 전체시간대 기준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방송사 측은 방송사에 중요한 규제는 주시청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가 아니라 경영난 속에 적자 유발을 가중시키는 전체 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방송사 측은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은 전체 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방송사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방송사 측은 상술한 설명을 근거로 전체 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을 폐지하더라도 방송사가 체감하는 규제 정비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였다.

한편, 드라마제작사는 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드라마 편성 시간은 주시청시간대의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를 폐지, 또는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 비율을 축소하더라도 드라마 분야 외주제작사는 수익적 측면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비드라마제작사는 방송사에 외주제작사와 상생하며 공정한 외주제작시장을 조성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공정한 외주제작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동 규제의 정비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끝으로 연구진은 “지역방송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규제 폐지”라는 개선안을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재 지역방송은 지역MBC의 경우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상’, 지역민방은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2% 이상’의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구진의 개선안이다.

연구진은 상술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하였다.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지역방송의 현재 경영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동 개선안이 적절하며,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 간의 비율 차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방송사 측은 지역MBC를 사례로 들면서, 지역MBC도 중앙 본사와 동일하게 30%의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지역의 외주제작 환경을 고려할 때, 지역MBC가 동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나마 지역MBC에 대한 동 규제의 편성비율이

2022년 1월부터 20%로 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지역MBC와 같은 지역방송의 경우 외주제작 의무편성보다 자체 제작을 통한 지역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동 규제를 폐지하면 지역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나 독립제작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동 규제 폐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개진하지 않았다

## 2) 연구반 전문가의 개선안 검토 및 논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악한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의 쟁점과 연구진의 개선안을 연구반과 공유하고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먼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연구위원들은 점진적 규제 완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동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제 완화 기초와 방향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현시점에서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위원 간에 이견이 있었다.

먼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들의 의견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반은 과거에 구축된 방송환경과 당시의 지상파 위상을 기준으로 도입된 현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를 방송환경 변화와 사업자의 위상을 고려해 새로운 프레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둘째,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의 완화 기초 아래에서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비드라마)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에 걸맞게 특화된 제도를 도입하고 후속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용을 낮춘다면, 외주제작 인정기준 및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여 규제가 완화된 만큼 동 규제의 실효성을 보완할 장치도 더불어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반면, 일부 위원은 여전히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근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방송시장 진입 등 방송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영세제작사의 입지가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제

작사의 콘텐츠가 최소한의 플랫폼(예: 지상파)을 통해 이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동 규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구진은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폐지”에 대한 개신안을 두고 연구반과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를 폐지하고 전체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규제개선 방향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연구반은 전체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을 낮추는 것은 사업자 간에 형성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 폐지가 가장 현실적인 규제개선 대안이라고 제시하였다.

둘째,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방송사는 주시청시간대에 드라마를 주로 편성할 것이고, 드라마는 외주제작 비율이 높으므로 방송사의 실질적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편성비율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셋째, 다만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가 폐지되면 주시청시간대에 교양 부문의 순수외주제작물 편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양 부문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연구진은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물의 가중치를 현행 110%에서 130%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연구반에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물의 가중치를 110%에서 130%로 확대하는 개선안에 대한 연구반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먼저, 개선안에 찬성하는 위원진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위원진은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물의 가중치를 확대한다면, 방송사의 다양한 장르 편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이 의견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방송사는 주시청시간대의 장르를 시청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능과 드라마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다큐멘터리, 정보 프로그램 등 교양 분야의 장르 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장르의 다양성이 저하될 수 있다. 방송사의 이러한 주시청시간대 편성 경향을 고려할 때,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물에 13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방송사가 주시청시간대에 예능, 드라마 분야 이외에도 다큐멘터리, 정보 프로그램 등 교양 분야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진은 동 규제 수정안으로 인한 다양한 장르

편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연구위원은 동 규제의 개선안이 오히려 교양 분야의 제작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개선안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개선안에 따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물의 가중치를 110%에서 130%로 확대하면, 방송사는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전체 제작편수나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을 축소하더라도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방송사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1시간 단위의 순수외주제작 교양 프로그램 10편을 편성해야 하지만, 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면 주시청시간대에 동 단위의 순수외주제작 교양 프로그램 8편을 편성하는 것만으로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물의 가중치를 110%에서 130%로 확대하는 개선안은 역설적으로 교양 분야의 외주제작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제 4 장 결 론

보고서의 결론에서 연구진은 편성규제 항목별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진은 편성규제 항목별 규제 개선안을 연구반과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일부 편성규제 항목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항목별 규제 개선 방안은 연구반의 논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 제 1 절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개선 방안

#### 1. 개선 방안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오락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규제는 앞서 동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루는 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장르의 융복합 현상에 따른 규제 실효성 저하, 제작자의 창의성 제약, 글로벌 OTT 서비스 대비 비대칭 규제에 따른 방송사의 경쟁력 저하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연구진은 상기한 동 규제의 문제점<sup>61)</sup>을 해소하는 한편,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반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폐지를 제안한다. 다만, 연구진은 한국방송공사(KBS)는 공적 재원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만큼 동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사회문화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연구반은 동 규제를 폐지하면 오락 프로그램이 과다 편성되어 방송이 상업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연구진은 동 규제의 폐지로 제기될 수 있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행 방송평가 제도와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

61) 구체적 문제점 및 연구반의 상세한 논의 내용은 3장의 각 규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조

활용을 제안한다.

먼저, 현행 방송평가 제도에는 방송사의 주시청시간대 오락 분야의 최대 편성비율과 보도 분야의 최대 편성비율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표 4-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송사업자가 오락 분야 편성비율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오락 분야를 60% 미만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보도 분야는 방송사업자가 40% 미만으로 편성하여야 보도 분야 편성비율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방송평가 제도에는 방송사의 조화롭고 균형적 편성을 유인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진은 현행 방송평가 제도를 통해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를 폐지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4-1>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의 배점방식 및 평가대상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안)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오락 분야/ 보도 분야	오락 분야 (지상파 25점/ 중편* 20점)	① 편성비율: 60% 미만이면 25점, 70% 이상이면 0점 ② 편성비율: 60% 이상 70% 미만이면 25점- (편성비율-60%)×2.5점
	최대 편성비율 평가	보도 분야 (지상파 25점/ 중편* 20점)	① 편성비율: 40% 미만이면 25점, 50% 이상이면 0점 ② 편성비율: 40% 이상 50% 미만이면 25점- (편성비율-40%)×2.5점

주: \*중편PP 점수 산정 방식: 지상파 50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사업자 배점 비율만큼 환산하여 최종점수 산정

자료: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2021. 12.)」에 따른 방송평가 세부기준(2021)

또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에는 방송사의 분야별 편성 실적 및 편성 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표 4-2>, <표 4-3> 참조). 예를 들어,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파 방송사는 재허가 제도를 통해 방송 분야별 방송비율 실적(30점)과 계획(20점)을 평가받고 있다. 중편PP 또한 재승인 제도(<표 4-3>)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 편성 수급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점)과 방송 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절성(40점)을 평가받아야 한다. 게다가, 필요시 규제당국(방송통신위원회)이 허가조건이나 권고사항을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에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sup>62)</sup>” 과 같은 권고사항을 중편PP에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현행 방송평가 제도와 함께 재허가·재승인 제도로도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표 4-2〉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정성 배점 및 평가방법(지상파)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안)
3.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점)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50점/지역방송 40점)	실적 20점 (지역: 15점)	① 직전 재허가 및 신규허가시 제출한 방송 편성 계획 대비 이행실적 ② 방송분야별·제작주체별 편성계획 대비 이행 실적 -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편성방송시간 -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제작방송시간 - 분야별 방송비율 -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실적 - 지역방송국: 자체 제작방송의 분야별 방송비율 ③ UHD 방송국: UHD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 UHD 프로그램 방송시간 및 편성 비율 등 ④ 국내외 수상실적 및 방송프로그램 해외 수출 실적 평가 ⑤ 프로그램 기획·제작 종사자의 자율성 보장 실적 - 방송편성규약의 적정성 - 방송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 편성·보도·제작 분야의 제작자의 자율성 보장 시스템 작동 여부
		계획 30점	① ' 20년도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방송프로그램

62) 2020년 중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출처: 2020년도 하반기 종합편성PP 재승인 백서)

		(지역: 25점)	기획·편성의 기본방향의 적정성 ② ' 20년도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주요 프로그램 제작 계획의 적정성 ③ 방송분야별·제작주체별 편성계획의 적정성 -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편성방송시간 -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제작방송시간 - 분야별 방송비율 -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실적 - 지역방송국: 자체 제작방송의 분야별 방송비율 ④ UHD 방송국: UHD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계획의 적정성 - UHD 프로그램 방송시간 및 편성 비율 등 ⑤ 프로그램 기획·제작 종사자의 자율성 보장 계획의 적정성
--	--	-----------	--

자료: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2021)

<표 4-3>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정성 배점 및 평가방법(종편PP)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안)
3.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정성(20)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방송분야별, 제작주체별 등) 수급 실적 ·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방송법제4조) 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정성(30)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방송분야별, 제작주체별 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방송법 제4조) 등
	⑧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40)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의 적절성(15)	·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편성 실적 ·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구(또는 회의) 설치 및 운영실적 등 기타 균형적 편성을 위한 제도운영 실적 등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계획의 적절성(25)	·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편성 계획 ·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구(또는 회의) 설치 및 운영계획 등 기타 균형적 편성을 위한 제도운영 계획 등

자료: 2020년도 하반기 종합편성PP 재승인 백서(2021)

상기한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진은 보도·교양·오락의 조화로운 편성을 법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오락비율 상한은 폐지하며,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오락 편성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 2. 기대효과

연구진은 규제 개선안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자율적이고 유연한 편성으로 글로벌 OTT 서비스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구축하고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둘째, 방송산업 전반의 경제적 효율성 향상이 고품질 콘텐츠 제작·편성으로 이어져 시청자 복지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제의 완화가 ‘종합편성’이라는 틀 안에서 각 방송사의 특색을 강화할 수 있는 제작·편성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규제의 틀 밖에서 막강한 경쟁우위를 보이는 OTT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개선 방안

### 1. 개선 방안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는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전문분야 외의 다른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을 방지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동 규제는 방송매체 간 규제 차등화의 정당성이 희박하고 근거가 불명확하여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동 규제는 유료방송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규제 형평성과 동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OTT 서비스 대비 유료방송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연구진은 동 규제의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 편성 방송사업자의 매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반에서 제기된 규제 완화 논리<sup>63)</sup>와 매체 간 규제 형평성과 최소 규제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 분야 편성규제 개선 방안으로 의무 편성비율을 SO·위성, PP 등 매체 구분 없이 ‘60%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표 4-4〉 주된 방송 분야 편성규제 개선 방안

현 행		개 선	
지상파	매 반기 60% 이상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매 반기 60% 이상
SO·위성	매 반기 70% 이상		
PP	매 반기 70% 이상		
데이터방송채널	매 반기 60% 이상		
공동체라디오	매월 60% 이상		

63) 연구반의 구체적 논의와 규제 정비 근거는 3장 참조

다만, 연구진이 제시한 규제개선 방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후속연구를 통해 재확인 또는 재고해야 한다. 먼저, 방송사업자가 시도하는 장르 융합 또는 결합 등 장르적 특성의 변화를 정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둘째, 중앙전파관리소가 운영하는 ‘주된 방송 분야 확인 자문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분야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는 주된 방송 분야의 공식적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는 주된 방송 분야의 분류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공동 개발해야 한다.

## 2. 기대효과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 분야 편성규제 개선 방안이 수용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선 방안에 따라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 간소화로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는 방송사업자의 새로운 제작·편성 운용을 유인하고, 방송사업자의 혁신 성장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IPTV 등 플랫폼사업자와 시청자의 선택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시장 내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킬러콘텐츠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연구진의 개선 방안은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혁신적 콘텐츠 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OTT 서비스 등 신유형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매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방송시장의 활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 제 3 절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 개선 방안

#### 1. 개선 방안

수중계 편성규제는 지역민방 등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과도하게 수중계하는 것을 방지하여 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규제 관련하여서는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지역민방·지상파DMB 대비 공동체라디오의 비대칭 규제 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연구진은 동 규제의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민방의 지역성 구현과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규제 개선 방안을 단기적 개선 방안(공동체라디오)과 중장기적 개선 방안(지역민방)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연구진은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제작물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 반기’로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동 규제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간은 ‘매월’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역민방과 DMB 사업자의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간은 ‘매 반기’로 규정하고 있어, 방송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선 방안의 목적은 비대칭 규제 등 동 규제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공동체라디오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연구진은 또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지역민방을 규제 대상으로 한 동 규제의 자체편성 중심의 의무비율 제도를 자체제작 편성규제로의 전환을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중장기 개선 방안의 목적은 연구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자체제작을 강제하지 못하는 자체편성 의무비율 제도의 한계 등 동 규제의 문제점<sup>64)</sup>을 해소하고, 지역민방의 지역성 구현을 확대·촉진하고 콘텐츠 자체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진이 지역민방에 대한 동 규제의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22년 1월부터 수중계 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

---

64) 구체적 문제점 및 연구반의 상세한 논의 내용은 3장의 각 규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조

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편성고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호를 위해 변경된 제도 아래에서의 지역민방 자체편성 및 자체제작 편성비율 추이를 일정 기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진은 이에 변경된 제도의 안정화 이후 편성현황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자체편성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자체제작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규제 개선 방향으로 판단하였다.

## 2. 기대효과

중장기적으로 지역민방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수중계 제한 규제를 자체제작 편성규제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자체제작 편성에 따른 지역밀착형 콘텐츠와 지역친화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확대는 지역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 형성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방송의 지역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 제 4 절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개선 방안

### 1. 개선 방안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는 외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이 과도하게 특정 국가의 제작물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여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변화로 인한 동 규제의 실효성 문제,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규제 부담,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를 제약할 근거 미흡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연구진은 동 규제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방송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를 제안한다.

연구반에서도 동 규제 폐지에 대한 다양한 근거가 논의되었다. 연구진은 해외 콘텐츠 유통경로의 다원화, 이용자가 다국적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 국내제작물 편성규제로 국내제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의 존속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과 당위성이 낮다고 보았다.

이러한 규제 폐지 근거와 연구반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진은 1개국 수입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 2. 기대효과

연구진은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방송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현재 방송사업자는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규제, 1개국 수입물 규제 등 과도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동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방송사업자에게는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규제 체계 측면에서도 규제 간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방송사업자는 그동안 동 규제 때문에 채널의 정체성이나 이용자의 선호와 무관한 제3국의 콘텐츠를 추가로 수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셋째, 방송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사업자가 편성규제로부터 자유로운 OTT 서비스 등 신유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송사의 신유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대응 능력 신장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 제5절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개선 방안

### 1. 개선 방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애니메이션 창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규제를 둘러싼 방송사업자와 애니메이션 제작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만큼이나, 연구반에서도 동 규제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다. 동 규제는 방송매체의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 여력의 감소, 애니메이션의 시청 경로의 다변화에 따른 동 규제의 시청자 수혜 효과,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차등화의 규제 형평성 저하, 중복규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연구진은 동 규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애니메이션 업계와 방송사업자가 상생하도록 기존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비율 변화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동 규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진은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동 규제의 개선 방안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을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해당 개선 방안 도출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방송법 제71조제3항<sup>65)</sup>은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비율을 시청률과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편성고시에서는 종편PP와 애니PP에 대해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신규 애니메이션을 방송사업매출액에 따라 차등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4-5〉 참조). 이에 반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방송사업매출액과 같은 별도의 기준 없이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신규 애니메이션을 1% 이상 편성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

65) 방송법 제71조제3항: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표 4-5〉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지상파 3사	종합편성PP		애니메이션PP	
1% 이상	500억 원 미만	0.3% 이상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0.3% 이상
	600억 원 미만	0.5% 이상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0.6% 이상
	700억 원 미만	0.7% 이상	1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0.8% 이상
	700억 원 이상	1% 이상	200억 원 이상	1% 이상

자료: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이렇듯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편PP 및 애니PP 간 상이한 규제 방식은 법 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하고,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연구진은 동 규제가 수반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 규제가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술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진은 나아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의무비율 차등 구간을 최근 3개 연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표 4-6〉 참조). 구체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4,000억 원 미만은 0.3%, 5,000억 원 미만은 0.6%, 6,000억 원 미만은 0.8%, 6,000억 원 이상은 1%로 설정하였다(〈표 4-7〉 참조). 연구진이 제안한 의무비율 차등 구간에 따르면 방송사업매출액을 6,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을 1%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연구진이 방송사업매출액 6,000억 원 이상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1%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기존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방송사업자와 애니메이션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1% 이상 의무편성의 기준이 되는 방송사업매출액 6,000억 원은 지상파 3사의 최근 3년간 방송사업매출액을 크게 밑돌고 있어, 개선 방안을 도입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신규 애니메이션을 1% 이상 의무편성하여야 한다.

〈표 4-6〉 방송사별 방송사업매출액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KBS	MBC	SBS	JTBC	TV조선	MBN	채널A
2018년	14,199	6,753	8,473	3,478	1,537	1,478	1,526
2019년	13,456	6,446	7,076	3,259	1,865	1,563	1,540
2020년	13,522	6,979	7,055	3,042	2,618	1,730	1,689

자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0)

한편, 연구진은 종편PP의 방송사업매출액 차등 구간을 종편PP의 최근 방송사업매출액을 고려하여 현행화할 것을 제안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의무 편성비율을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화하고자 하는 현재 시점에서 종편PP의 방송사업매출액 구간도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행 종편PP의 방송사업매출액 차등 구간은 2012년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의 대상을 종편PP까지 확대<sup>66)</sup>하면서 설정된 것으로, 최근 종편PP의 방송사업매출액은 종편PP의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1%의 편성 기준인 700억 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종편PP 4사의 최근 3년 방송사업매출액 평균은 2,110억 원으로 종편PP에 대한 1% 이상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비율 부과 기준인 방송사업매출액 700억 원을 3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연구진은 종편PP에 대한 의무비율 차등 구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종편PP에 적용되는 방송사업매출액 구간의 현행화를 제안한다. 〈표 4-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종편PP의 방송사업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은 0.3%, 1,250억 원 미만은 0.6%, 1,500억 원 미만은 0.8%, 1,500억 원 이상은 1%로 설정하였다.

연구진은 이상의 제안 사항을 종합하여,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표 4-7〉 참조). 다만, 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매출액의 등락 수준을 감안하여 의무편성 비율 부과 기준의 정례적 현행화를 고려해야 한다.

66) 편성고시 2012년 개정[시행 2012. 7. 1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45호, 2012. 7. 18., 일부개정]

〈표 4-7〉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개선 방안

현 행					
지상파 3사		종합편성PP		애니메이션PP	
1% 이상	500억 원 미만	0.3% 이상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0.3% 이상	
	500억 원 이상 600억 원 미만	0.5% 이상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0.6% 이상	
	6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0.7% 이상	1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0.8% 이상	
	700억 원 이상	1% 이상	200억 원 이상	1% 이상	
개 선					
지상파 3사		종합편성PP		애니메이션PP	
400억 원 미만	0.3% 이상	100억 원 미만	0.3% 이상	현행과 같음	
4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0.6% 이상	10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0.6% 이상		
500억 원 이상 600억 원 미만	0.8% 이상	1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0.8% 이상		
600억 원 이상	1% 이상	150억 원 이상	1% 이상		

## 2. 기대효과

연구진은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개선(안)이 수용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예상한다. 첫째, 동 개선(안)은 지상파·종합PP의 의무비율을 1%로 유지하여 애니메이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지상파도 종편·애니PP처럼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으로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의 의무율을 차등화함으로써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제 6 절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개선 방안

### 1. 개선 방안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는 독립 영상제작사를 육성하여 국내 방송영상물 제작시장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제작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규제 또한 외주제작 시스템이 안착됨으로써 동 규제의 정책적 목표 달성,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 편성규제의 실효성 저하, 방송사의 자체제작 역량 약화, 규제 중복 등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연구진은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면서도 외주제작 업계와 상생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의무편성 비율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방송사업자에게 규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폐지를 제안한다. 현재, 방송사업자는 전체시간대 순수외주 편성규제와 함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 편성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표 4-8>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 편성비율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송사업자는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 의무비율 10%를 충분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순수외주제작물을 편성하고 있다. 연구반은 동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방송사가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고 외주비율까지 높은 드라마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동 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방송사의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물 편성비율이 현재 편성비율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진은 이렇듯 동 규제의 실효성 저하와 규제 존속의 합리적 근거가 미흡한 점에 주목하고, 동 규제의 폐지를 제안한다.

〈표 4-8〉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 편성비율 현황

(단위: %)

구분	KBS1	KBS2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평균
2018	23.5	52.1	40.0	34.1	-	-	-	-	36.6
2019	18.2	52.8	32.2	38.0	27.3	53.1	49.5	52.7	40.5
2020	17.6	47.3	26.6	36.4	24.4	47.8	42.3	49.2	37.9

자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실시결과(2018-2020)

둘째,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등을 위해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의 폐지를 제안한다. 지역방송은 어려운 경영상황과 열악한 외주제작환경 때문에 순수외주제작물을 제작하기보다 수중계나 구매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동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지역방송의 이러한 현실은 방송사가 외주제작산업을 육성하고 프로그램 제작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동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동 규제는 지역방송의 설립 취지와도 배치된다. 지역방송은 지역 친화적이고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성을 구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지, 외주제작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아니다. 방송사 측도 지역의 열악한 외주제작환경, 지역방송의 경영상황 악화, 자체제작을 통한 지역성 확보의 중요성 등을 동 규제의 폐지 근거로 개진한 바 있다. 연구진은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성 구현 및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방송에 대한 동 규제의 폐지를 제안한다.

셋째, 규제 간소화를 위해 지상파PP<sup>67)</sup>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폐지를 제안한다. 동 규제는 법령 상으로만 존재할 뿐, 규제 대상인 지상파PP는 규제 도입 이후 시장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일반PP 편성규제를 통해 지상파PP를 규율할 수 있다.

67)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 제9호: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PP)” 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 2. 기대효과

상술한 규제개선 방안이 수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의 폐지는 과잉·중복규제의 소지가 있는 외주제작 관련 편성규제를 단순화하여 편성규제 합리화에 기여하는 한편, 방송사업자의 편성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의 폐지는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역량 강화 및 지역성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지상파PP에 대한 동 규제의 폐지는 규제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제7절 기타 편성규제 개선 방안

연구진은 제7절에서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규제와 지상파DMB 편성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각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별 문제점을 파악한다. 규제의 문제점, 규제 정비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1.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사업자는 국가영상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연간 채널별 전체 방송시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방송법 제71조 제1항). 다만,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매체별로 차등 적용한다(방송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또 국내제작물 의무편성에 대한 규제는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방송법 제71조 제2항, 방송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다만,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규제는 연간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편성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한 편도 편성하지 않는 채널에는 동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표 4-9〉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관련 법규

방송법 제71조 제1항	①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71조 제2항	②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①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방송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p>②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화: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li> <li>2. 애니메이션: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li> <li>3. 대중음악: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li> </ol>

연구진은 규제 개선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규제를 현행대로 존치할 것을 제안한다.

동 규제와 관련한 연구반의 논의에 따르면, 동 규제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FTA 등 동 규제와 연관된 사안들을 고려할 때 동 규제의 완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존치 시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비해 미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연구진은 연구반의 논의를 종합하여 동 규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론 지었다. 연구반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동 규제의 구체적 존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연구반은 동 규제의 문제점 측면에서 동 규제의 실효성이 미약해졌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이 해외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높아 방송사의 편성 경향이 국내 프로그램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는 동 규제가 없더라도 국내 프로그램 중심의 편성 경향을 현행대로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동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연구반은 매체별로 편성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또 다른 문제로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지상파방송, 종편PP, PP의 시장 점유율과 시장 경쟁력의 차이가 매체별로 차등 비율을 적용할 만큼 그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에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 규제가 동반하는 다양한 문제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규제의 정비 방향은 완화가 적절하다. 그러

나 연구진은 동 규제가 방송사업자에게 초래하는 규제 부담이 적고, 실제로 방송사업자의 규제 완화 요청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규제 정비의 실익을 두고 연구반과 검토하였다.

규제 정비 실익을 검토한 결과, 연구반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첫째, <표 4-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반은 동 규제가 한미 FTA에서 현재 유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단 규제가 완화되면 완화된 그 수준보다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 없는 역진방지(Ratchet) 조항<sup>68)</sup>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동 규제가 수반하는 이러한 제약을 감안할 때, 무리한 규제 개선보다는 규제 존치가 실익이 크다. 둘째,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유지와 인기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단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향후 위상변화가 긍정적 방향으로만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위상 약화에 대비하여 동 규제 존치는 적절하다. 셋째, 향후 OTT 서비스 또한 국내제작 콘텐츠 쿼터의 규율을 받게 된다면 동 규제가 OTT 서비스의 국내제작 콘텐츠 쿼터 제도 마련의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상술한 동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실익에 대한 연구반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내제작물 보호의 안전장치 또는 보루로서 동 규제를 현행대로 존치할 것을 제안한다.

<표 4-10> 한미 FTA의 편성규제 관련 현재 유보

유보종류	예외가 인정된 편성규제
현재유보 (부속서 I)	<p>▶ 국내제작물 쿼터: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방송법상의 전체 방송시간 및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규제</p> <p>&lt;대한민국 콘텐츠 편성비율&gt;  가. 지상파·지상파PP-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80%  나. SO·위성-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50%  다. PP-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50%</p> <p>&lt;분야별 대한민국 콘텐츠 편성비율&gt;</p>

68) 구체적으로 현재 유보에 포함된 비합치조치들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만 허용한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유보를 통해 그 예외가 인정된 규제들도 일단 규제가 완화된다면 완화된 그 수준보다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p>지상파:</p> <p>가. 애니메이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5%</p> <p>나. 영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5%</p> <p>다. 음악: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60%</p> <p>SO, 위성 또는 PP:</p> <p>가. 음악: 채널별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60%</p> <p>나. 애니메이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0%</p> <p>나. 영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0%</p> <p>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DMB에 대하여는 일정한 별도의 콘텐츠 쿼터 요건 적용</p> <p>위성DMB에 대하여는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콘텐츠 쿼터 요건 적용</p> <p>&lt;1개 국가 제작 콘텐츠 편성비율[한도]&gt;</p> <p>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SO,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PP의 분야별 외국 콘텐츠 분기별 전체 편성시간의 100분의 80 또는 그 이상이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외국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1개국 콘텐츠 한도라 한다).</p>
--

## 2. 지상파DMB 의무편성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

지상파DMB는 방송법령에 따라 항목별 편성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지상파DMB 사업자는 수중계 의무편성 규제,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등 여러 편성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표 4-11>은 지상파DMB에 대한 편성규제 현황을 보여준다.

<표 4-11> 지상파DMB에 대한 편성규제 현황

구분	수중계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영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국내제작 대중음악	1개국 수입물	국내제작 신규애니
편성비율	80% 이하	60% 이상	25% 이상	35% 이상	60% 이상	90% 이하	0% 이상 <sup>69)</sup>

69)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08-135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③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는 에스비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의 이동수신을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모바일 서비스 등 지상파DMB를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지상파DMB의 이용률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광고매출도 동반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지상파DMB는 매체 경쟁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서 매체 존속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지상파DMB의 서비스 이용률은 2012년 30.8%<sup>70)</sup>에서 2020년 4.5%로 급감<sup>71)</sup>했으며, 광고매출액 또한 2012년 75억 원에서 2020년 15억 원으로 대폭 감소<sup>72)</sup>했다. 이렇듯 매체 경쟁력 약화에 따른 지상파DMB의 서비스 존속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지상파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진은 연구반과 논의를 거쳐 지상파DMB의 편성규제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OTT 서비스 등 신규 모바일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매체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DMB에 대한 수중계 편성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연구반은 지상파DMB의 매체 경쟁력과 서비스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지상파DMB의 수중계 편성규제를 폐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우려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지상파DMB 수중계를 폐지하여 지상파DMB가 지상파 수중계를 24시간 계속하더라도, 지상파DMB의 매체영향력을 고려하면 이용자에게 별다른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 동 규제는 규제 도입 이후 신규 매체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이유로 지상파DMB에 대해 현재까지 시행유예 중이다. 이는 동 규제의 폐지가 애니메이션 산업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규제 최소화의 원칙 및 규제 간소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규제의 폐지를 제안한다.

---

에스(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

7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2012)

71)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2020)

72)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0)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NHK 경영위원회(2020), 『2020년 방송프로그램 편집의 기본계획(2020年度 国内放送番組編集の基本計画)』.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2020),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김남두·주성희·김청희·노은정(2019), 『방송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중계비율 등 편성규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9-24, 방송통신위원회.
- 김성웅(2011), 『중국 방송법규 체계 및 규제제도 분석』, 방송통신정책 23권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방송통신위원회(2012),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 방송통신위원회(2020), 『2020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 방송통신위원회(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 방송통신위원회(2021),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 방송통신위원회(2021), 『2020년도 하반기 종합편성PP 재승인 백서』.
- 방송통신위원회(202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21.12.)에 따른 방송평가 세부기준』.
- 배진아(2020),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편성 규제 원칙의 재정립』, 방송문화(422), 한국방송협회.
- 변상규(2018), 『지역방송의 현실과 한계, 향후 지향점은?』, 방송 트렌드 & 인사이트 2018년 3호 Vol.16, 한국콘텐츠진흥원.
- 성옥제·이종원·정용찬·황준호·나성현·송종길·최민재·조용환·김인희(2008),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중장기 편성정책 수립방안』,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08-14, 방송통신위원회.
- 심홍진·김청희(2019), 『2019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2018년 자료)』,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19-10, 방송통신위원회.
- 심홍진·김청희(2020), 『2020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2019년 자료)』, 연구기관: 정보통신

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20-12, 방송통신위원회.

심홍진·정은진(2020), 『방송통신 매체 융합에 따른 편성규제 실효성 제고방안 및 해외사례 비교연구』,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0-25, 방송통신위원회.

윤석년·김경환·황성연(2011), 『외주 제작시장 활성화 및 외주편성규제 개선방안연구』, 연구기관: 한국언론학회,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지정-1, 방송통신위원회.

조준상(2013),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기관: 공공미디어연구소, 국회입법조사처.

주성희·김창희(2017), 『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따른 편성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7-2, 방송통신위원회.

주성희·이주영(2016),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6-33, 방송통신위원회.

주성희·정은진·유희진(2018). 『방송분야 국제규범 변화 및 통상협상 대응방안 연구』,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 2018-0-003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창윤·황성연·유승현(2012), 『방송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 및 도입방안 연구』, 연구기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연구 2012-19,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년 방송영상산업백서』.

#### [해외문헌]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2015-86” , CRTC, Mar 12, 2015, accessed Dec 20, 2021, <https://crtc.gc.ca/eng/archive/2015/2015-86.htm>.

“Changes to the Australian content and children’s television standards - consultation 35/2020” ,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cessed Dec 30, 2021, <https://www.acma.gov.au/consultations/2020-11/changes-australian-content-and-childrens-television-standards-consultation-352020>.

“Les quotas francophones à la radio ont été assouplis… mais la bataille continue” , Telerama, Mar 23, 2021, accessed Dec 30, 2021,

<https://www.telerama.fr/radio/les-quotas-francophones-a-la-radio-ont-ete-assouplis-mais-la-bataille-continue,140122.php>.

“New funding in Budget to deliver Australian screen content“, Minister for Communications, Urban Infrastructure, Cities and Arts, accessed Dec 30, 2021, <https://minister.infrastructure.gov.au/fletcher/media-release/new-funding-budget-deliver-australian-screen-content-0>.

“Standards for TV and radio broadcasters” ,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cessed Dec 30, 2021, <https://www.acma.gov.au/standards-tv-and-radio-broadcasters>.

“We don’ t need content quotas” , The Conservative, Apr 7, 2021, accessed Dec 30, 2021, <https://theconservative.online/article/we-dont-need-content-quotas>.

Cullen International, accessed Dec 30, 2021, <https://www.cullen-international.com>.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2019). Mapping of national rules for the promotion of European works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2011). Revised Guidelines for Monitor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s 16 and 17 of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AVMS) Directive.

Steve Waldman and the Working Group on Information Needs of Communities (2011). The Information Needs of Communities – The changing media landscape in a broadband age. United State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ffice of Strategic & Policy Analysis.

[부록 1]

방송법<sup>73)</sup>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主視聽時間帶” 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6. 9.>

④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0. 27.>

⑥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0. 27., 2020. 6. 9.>

⑦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20. 6. 9.>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

73) 방송법 중 편성규제와 관련한 조항들 중심으로 선별 수록

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4. 5. 28., 2016. 2. 3.>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14.>

⑩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27., 2011. 7. 14., 2020. 6. 9.>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2.>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②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2., 2012. 1. 17., 2020. 6. 9.>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 17.>

④ 방송사업자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20. 6. 9.>

⑤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 1. 1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구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17.>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9. 12. 10., 2020. 6. 9.>

② 삭제 <2015. 6. 22.>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0. 6. 9.>

④ 제1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6. 9.>

[제목개정 2015. 6. 22.]

[부록 2]

방송법 시행령<sup>74)</sup>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2021. 4. 30.>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 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 3. 20., 2007. 8. 7.>

③ 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 법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21. 4. 30.>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

74) 방송법 시행령 중 편성규제와 관련한 조항들 중심으로 선별 수록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8. 7.,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⑥ 법 제6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4. 11. 24., 2021. 4. 30.>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하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80 이하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를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1. 8. 19., 2021. 4. 30.>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2. 7. 17.>

④ 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2012. 7. 17., 2021. 4. 30., 2021. 12. 9.>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⑤ 방송사업자(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 4. 30.>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⑦ 제1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5항에 따른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8. 19., 2012. 7. 17.>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7., 2018. 12. 24.>

② 삭제 <2016. 5. 27.>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2010. 10. 1., 2016. 5. 27.>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5. 27.>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8. 19., 2016. 5. 27.> [제목개정 2016. 5. 27.]

[부록 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5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항·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①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중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지원(GI), 제주방송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비율은 전년도 비율 대비 채널별로 1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다.

1.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8 이내

2.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6 이내

3. 방송사업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4 이내

4. 방송사업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2 이내

5. 방송사업매출액이 2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6. 방송사업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내

7. 방송사업매출액이 3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8.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8 이내

②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중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지원(G1), 제주방송, 경인방송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비율은 전년 도 비율 대비 채널별로 1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다.

1.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8 이내

2.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6 이내

3. 방송사업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4 이내

4. 방송사업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2 이내

5. 방송사업매출액이 2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6. 방송사업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내

7. 방송사업매출액이 3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8.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8 이내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전문편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편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③ 방송사업자는 별표2를 충족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이 고시에서 “애니메이션“이란 스스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 촬영하여 제작하는 실사 영상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을 말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4.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 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④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국내제작 대중음악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둘 이상의 음악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2항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3항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분류에 따른 방송사업자군 내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제1항 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②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

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5 이상

3. 방송사업매출액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7 이상

4. 방송사업매출액 7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방송사업매출액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6 이상

3. 방송사업매출액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8 이상

4. 방송사업매출액 2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⑥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 제1항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출자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

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방송프로그램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2.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3.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4.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5. 방송프로그램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6.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 승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

다.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라.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마. 주간 단위 촬영·작업 계획 및 촬영 장소

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 제작 사전 승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2. 사후 승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

다.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라.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마. 방송프로그램 사본(방송 편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크레딧이 명기된 국내 및 해외 방송 프로그램 사본)

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 제작 사후 승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내에 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인정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문서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국내 제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 제작영화및예술영화의인정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영화

제7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 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으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 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애니메이션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 기획서
  2.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3. 애니메이션 줄거리 및 대본
  4. 애니메이션 캐릭터집 및 배경집
  5.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6. 외국 공동제작사 확인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함)
  7. 애니메이션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8. 내국인이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9.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은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의 국적은 별표3에서 정한 기준으로 구별한다.

제9조(순수의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순수의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9 이상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3. 제2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대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5.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6 이상  
6.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7.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① 제9조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한 방송프로그램 이어야 한다.

1. 외주제작사가 작가(방송프로그램의 극본, 구성대본 등을 집필하는 자로 여러 명이 집필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2. 외주제작사가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3. 외주제작사가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4.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조달하는 경우
5. 외주제작사가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1. 방송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전송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복제·배포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공영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2차적저작물작성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에 대해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라 함은 교섭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구역이 국외이거나 재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시청자가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그 밖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백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

의 0.5 이상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의 방송시간) ①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② 제3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③ 제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다음 각호의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1. 평일 : 7시~9시, 17시~20시
2.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④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⑤ 제9조제1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분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한다.

⑥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교양분야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한다.

⑦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30으로 인정한다.

⑧ 제10조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다만,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은 다음 각호의 시간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에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1. 평일 : 11시부터 15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11시부터 16시까지

제12조(신기술 시험방송 채널에 대한 특례) 방송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3조(편성비율 적용기간) 편성비율이 적용되는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에게는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월간 :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2. 반기간 : 1월 1일부터 6월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5호, 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록 4]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구별 기준(제5조 관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구별 기준(제5조 관련)

인정기준	분야별 점수의 합계가 14점 이상인 제작물 다만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영상과 미술-CG를 제외한 18점 중 11점 이상인 제작물
분야별 점수	①기획·제작: 3점, ②원작·대본: 3점, ③연출: 3점, ④주연(제1성우 또는 나레이터): 3점, ⑤조연(제2성우 또는 나레이터): 2점, ⑥영상: 2점, ⑦음악·음향: 2점, ⑧미술-CG: 2점, ⑨편집: 2점  ※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의 경우, ‘④주연(제1성우 또는 나레이터)’ 항목을 ‘출전 선수’ 로, ‘⑤조연(제2성우 또는 나레이터)’ 항목을 ‘해설·중계’ 로 대체 적용
추가 점수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촬영 및 편집 장소가 한국에 위치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각각 1점의 추가 점수 부여

[부록 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구별 기준(제7조 관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구별 기준(제7조 관련)

<p>공통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이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을 보유하고 각 분야별로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16점(가산점 포함) 이상인 제작물</li> <li>■ 전체 영상의 100분의 70이상 신규로 창작된 제작물</li> <li>■ 제작과정에서 내국인이 개발한 고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각 항목별 점수와는 별도로 2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과할 수 있다.</li> </ul>
<p>이차원(2D) 애니메이션</p>	<p>①프로듀서: 3점, ②총감독 3점, ③시나리오 2점, ④모델(캐릭터디자인) 2점, ⑤배경디자인 2점, ⑥스토리보드 2점, ⑦애니메이션연출 2점, ⑧배경제작(컬러) 2점, ⑨레이아웃 2점, ⑩원화제작 2점, ⑪동화제작 2점, ⑫컬러링(페인팅) 1점, ⑬촬영 1점, ⑭영상편집 1점, ⑮주제가 작사, 작곡 1점, ⑯성우녹음 1점, ⑰음향효과, 믹싱 1점</p>
<p>삼차원(3D) 컴퓨터그래픽(CG) 애니메이션</p>	<p>①프로듀서 3점, ②총감독 3점, ③시나리오 2점, ④모델(캐릭터디자인) 2점, ⑤배경 디자인 2점, ⑥스토리 보드 2점, ⑦애니메이션연출 2점, ⑧모델링, 맵핑 2점 ⑨ 리깅 1점, ⑩레이아웃(셋팅) 1점, ⑪애니메이션 2점, ⑫비주얼이펙트/합성 2점, ⑬라이팅 2점, ⑭영상편집 1점, ⑮주제가 작사, 작곡 1점, ⑯성우녹음 1점, ⑰음향효과, 믹싱 1점</p>
<p>스톱모션 애니메이션</p>	<p>①프로듀서 3점, ②총감독 3점, ③시나리오 2점, ④모델(캐릭터디자인) 2점, ⑤배경 디자인 2점, ⑥스토리 보드 2점, ⑦애니메이션연출 2점, ⑧캐릭터 제작 2점, ⑨세트제작 2점, ⑩미술감독 1점, ⑪애니메이션, 촬영 2점, ⑫3D CG/FX 2점, ⑬합성 1점, ⑭영상편집 1점, ⑮주제가 작사, 작곡 1점, ⑯성우녹음 1점, ⑰음향효과, 믹싱 1점</p>

## [부록 6]

### 해외 주요국의 국내제작물 편성규제 사례

해외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수입제작물에 대한 1개국별 세부쿼터 사례는 없지만 ① 국내제작물에 대한 의무편성비율 또는 ② 해외제작물에 대한 편성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10년 방송사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총량을 완화(60%→55%)하였으며, 2015년 이후 기본서비스방송(지역방송국·교육방송)은 주시청시간대(6-12시) 50% 총량제한 유지, 전문유료채널은 의무편성 총량을 35%로 완화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sup>75)</sup>.

유럽연합의 경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제16조에 의하여 뉴스·스포츠 행사·게임·광고·텔레텍스트 서비스 및 텔레쇼핑 시간을 제외한 총 방송시간의 과반수를 유럽작품으로 편성해야 하며,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에 상응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다. 단, 시청률 0.3% 이하 영세채널, 지역전문채널, EU 미가입국 송출전용채널, EU 미가입국 언어전용채널은 예외로 두는 등 유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sup>76)</sup>

프랑스는 이러한 EU의 지침을 바탕으로 전체 방송 송출시간 중 최소 60% 이상을 유럽산 제작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였다. 모든 TV방송사는 주시청시간대에 연간 영화물 편성 송출시간의 최소 60% 이상을 유럽산 영화로, 최소 40% 이상을 프랑스어 영화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주시청시간대(Prime time)에는 해당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영화전문채널이 아닌 경우 주시청시간대는 대략 오후 8시30분부터 10시30분이며, 영화전문채널 또는 PPV(Pay-per-view) 서비스는 대략 오후 6시부터 오전 2시까지이다.

이탈리아도 EU의 지침에 따라 실시간 방송채널에 유럽산 콘텐츠 편성쿼터제를 시행하는데, 연간 방송시간 대비 유럽작품 의무편성비율을 2019년에는 53%에서 2021년 60%로 규정하였다.<sup>77)</sup> 또한, 방송사는 이탈리아어 원작 표현의 영화 및 시청각 작품 중 소설·애

---

75)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2015-86”, CRTC, Mar 12, 2015, accessed Dec 20, 2021, <https://crtc.gc.ca/eng/archive/2015/2015-86.htm>.

76) European Commission(2011).

77)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2019).

니메이션·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또는 기타 극작품의 TV 버전을 포함하여 문화나 과학적인 내용이 풍부한 작품을 매주 6%(18시~23시) 방영해야 하며 공영방송사 RAI의 경우 12% (절반은 이탈리아 오리지널 제작이 포함된 영화여야 함)를 방영해야 한다.

중국은 2004년 「해외 시청 프로그램 수입 및 전파 관리규정(2004)<sup>78)</sup>」 등에 의해 해외 프로그램 편성시간대 및 편성총량을 규제하고 있다. 각 방송채널은 일일 해외드라마 및 영화가 채널당 일일 영화드라마 총송출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황금시간대(19시~22시)에는 방송이 금지되며(광전총국의 허가 필요), 해외제작의 교육·과학·문화 TV 프로그램은 전체 방송량의 15% 초과할 수 없다. 유료방송 채널의 경우 해외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당일 총 방송시간의 30% 초과하여 방송할 수 없다. 이밖에도 중국은 2016년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자주창조업무에 추진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중국 방송사의 해외 포맷(판권) 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통지에 의하면 위성종합 채널에서 황금시간대(19시 30분~22시 30분)에 방영될 수 있는 해외 포맷 프로그램은 연 2편으로 제한된다. 또한, 한 위성종합 채널이 해당 시간대에 새로 방영하는 해외 포맷 프로그램은 1개로 제한되며 첫해에는 황금시간대에 방송 불가하다. 이밖에도 중국이 완전한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지 못한 프로그램(외국방송사 협력해 만든 프로그램, 외국인이 주요 창작인력인 프로그램, 외국인이 주요 지도 역할을 해 만든 프로그램 등)의 경우 해외 수입 프로그램으로 간주된다.

호주는 지상파방송사의 어린이프로그램(애니메이션 포함) 국내제작 신규편성 의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2020년 말 발표했으며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sup>79)</sup> 개정 전에는 2005년 민영지상파방송에 대해 국내제작물 55% 쿼터제를 부과하고, 「2016년 호주산 콘텐츠 방송 기준」 및 「2009년 어린이 텔레비전 방송기준」에 따라 어린이 프로그램의 국내제작물 신규편성 세부쿼터를 부과하였다.<sup>80)</sup> 이에 따르면 14세 이하 취학연령 어린이프로그램(C

---

78)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79) “Changes to the Australian content and children’s television standards - consultation 35/2020”,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cessed Dec 30, 2021, <https://www.acma.gov.au/consultations/2020-11/changes-australian-content-and-childrens-television-standards-consultation-352020>.

80) “Standards for TV and radio broadcasters”,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 제작물을 3년간 최소 96시간 이상 편성해야 하는데 1년간 최소 25시간 이상 신규 제작물을 편성해야 한다. 이후 2020년 9월 호주 통신사이버안전예술통신부는 민영지상파방송사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쿼터를 폐지하고 장르를 통합(드라마/어린이프로그램/다큐)하는 편성규제로 단순화 및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2021년 1월부터 적용).<sup>81)</sup> 구체적으로 드라마·어린이 프로그램·다큐멘터리 장르의 국내제작물 신규 편성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비 등의 기준에 따라 포인트를 책정하며 각 방송사는 연간 총 250점 포인트를 달성해야 한다(다큐멘터리 장르만 50점 상한선 제한). 하지만 공영방송사(ABC, SBS)의 경우 별도의 칙허장에 의해 규율되고 쿼터제가 없어 동 규제에 영향받지 않는다.

---

Authority, accessed Dec 30, 2021, <https://www.acma.gov.au/standards-tv-and-radio-broadcasters>.  
81) “New funding in Budget to deliver Australian screen content“, Minister for Communications, Urban Infrastructure, Cities and Arts, accessed Dec 30, 2021, <https://minister.infrastructure.gov.au/fletcher/media-release/new-funding-budget-deliver-australian-screen-content-0>.

[부록 7]

## 특수관계자 관련 법령

### 방송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8조(소유제한등) ① 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殊關係者**”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22., 2006. 10. 27., 2009. 7. 31., 2020. 6.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 12. 18., 2003. 5. 29., 2004. 3. 22., 2009. 7. 31., 2016. 1. 27., 2020. 6. 9., 2020. 12. 29.>
- ④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

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9. 7. 31.>

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 1. 26., 2009. 7. 31., 2016. 1. 27.>

⑥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 7. 31., 2020. 6. 9.>

⑦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6. 10. 27., 2009. 7. 31., 2020. 6. 9.>

⑧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22., 2007. 7. 27., 2009. 7. 31., 2020. 6. 9.>

⑨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 7. 31., 2020. 6. 9.>

⑩ 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2009. 7. 31.>

⑪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게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 7. 31.>

⑫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 7. 31., 2020. 6. 9.>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 제5항을 위반한 자

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6. 10. 27., 2009. 7. 31.>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⑮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6. 10. 27., 2009. 7. 31.>

⑯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 6. 22.>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⑰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 6. 22.>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7. 26.>

⑲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법률 제13341호(2015. 6. 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6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방송법 시행령

###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10. 1. 26., 2016. 5. 27., 2021. 12. 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 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3. 10., 2008. 2. 29., 2016. 5. 27.>

####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 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삭제 <2016. 5. 27.>



● 저 자 소 개 ●

---

심 흥 진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언론학 박사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 성 희

- 美 미시건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 은 정

- 성균관대 법학 석사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1-28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편성규제  
전면 개선안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broadcast programming regulation  
in a changing media landscape)

---

2021년 12월 일 인쇄

2021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kcc.go.kr](http://www.kcc.go.kr)

인 쇄 (주)현대아트컴 T. 02-2278-4482

---